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2020년 의령군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목 차 〉

1.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5
2. 산림사업 추진 부적정	11
3. 4급 승진임용 업무 등 부당 처리	22
4.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39
5.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45
6.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50
7. ○○○○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57
8. 공무원 채용 부적정	64
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71
10. 운수업계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79
11. 권역별 농촌개발사업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84
12. 0000회 행사관련 지원 부적정	89
13. 지원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해 보조금 선정 부적정	95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기술지도 관리 부적정	98
15. 00학습관 위탁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103
16. 불용물품 처분절차 부적정	109
17. 교량 재 가설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114
18. 기반시설(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118
19.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123
20. ○○○ ○○○○○○○○○○○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28
21. ○○○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140
22. ○○○○○○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152
23.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157
24. ○○○관광지 통나무집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66
2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부적정	173
26.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80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면적을 말하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의령군 계획 조례」 제17조에는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 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 행위인데 법령상 절차¹⁾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며, 국토 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개발행위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그리고,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 행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의령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신청 내용의 경우에는 의령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과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별 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목적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2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의령군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표】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허가 현황

연번	신 청 인	허가지역	목적	허가면적	허가일	용도지역 (제한면적)
소계				33,013		
1	○○ ○○○	○○면 ○○리 산○○	태 양 광 발 전 시 설	19,774	'18. 10. 18.	농림지역 (3만㎡)
2	○○○ ²⁾ (이후 면적 축소)			13,239		
소계				80,855		
3	○○○○○ ○○	○○읍 ○○리 산○○○	태 양 광 발 전 시 설	17,910	'19. 3. 15.	보전관리 지역 (3만㎡)
4	○○○○○○○ ○○○			14,924		
5	○○○○○ ○○○			14,403		
6	○○○○○○○ ○○○			14,758		
7	○○○○○ ○○○			○○○-○ ○○○-○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2) ○○○의 허가지는 2020. 9. 29.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거쳐 8,022㎡(당초 대비 △5,217㎡)로 허가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림지역 제한면적인 3만㎡의 범위내로 허가규모를 충족하게 됨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7건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거쳤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3)’, ‘환경영향평가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5)’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엄연히 구분되는 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에서는 관련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법인 및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이 아니며, 법인은 특별히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게 된다고 판단하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연접개발 제한 폐지 관련 공문에 따라 각각의 건이 규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는 도시사업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각각의 사업에서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해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3)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의 법령해석 및 업무 연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간담회, 타 시군과의 업무교류 등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통해 개발행위의 목적, 동일 또는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표면적으로 소유자만 다를 뿐 개인과 법인 대표로서 동일인 또는 (주)○○○○로부터 5명의 임대인 지위로 동일 필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는 목적과 성격, 내용이 동일하므로 충분히 특정인(법인)이 명의를 달리하여 허가 규모를 회피하여 초과하려는 의도가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실무자와 실무책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

또한, 연접제한 규정을 삭제한 시행령 입법취지와 같이 같은 법 제58조제1항 1호 단서 조항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할 수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는 제4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령군 ○○○○과에서는 개발행위 신청 건이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을 뿐인데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로 잘 못 알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마저도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에는 제1호 ‘전략환경평가’, 제2호 ‘환경영향평가’, 제3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오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데는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 못 해석하고 허가 하여준 실무자와 실무책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의령군 계획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와 ○○○○과 지방○○○○○ ○○○,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여 허가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선 요구

제 목 산림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2018. 4. 11. 제정·시행)에 따라 【표1】 과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2】 와 같이 조림사업을 통하여 관내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위험수목 제거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비(천 원)	개소	주수	배정금액	집행방법	비고(계약방법)
	600,000	405	2,589	600,000		
2020년	200,000	130	1,582	200,000	읍·면 재배정	1인견적 수의계약
2019년	200,000	84	601	141,000	본청 집행	1인견적 수의계약
		32	52	59,000	읍·면 재배정	1인견적 수의계약
2018년	200,000	159	354	200,000	읍·면 재배정	1인견적 수의계약

【표2】 2020년 조림사업 추진 현황

○ 추진계획 수립 : '20. 1. 23.(군수방침)

지구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비고
	면적(ha)	수량(본)	수종				
계	52	122,610		152		3개 업체	
○○○○지구	23.36	69,690	편백, 고로쇠 등	77	'20. 3. ~ 4월	(주)○○○	
○○○○지구	19.05	34,530	편백	48		○○○○○○○○	
○○○○지구	9.59	18,390	편백, 옷나무 등	27		(주)○○○	

2.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전문업체⁶⁾·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 라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전문업체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및 조례,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발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 매년 수립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위험수목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읍·면 재배정시에도 관련 공문에 반드시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할 것을 포함하여 통지하면서 시공업체의 자격기준과 통합발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과 및 읍·면에서는 목적과 성질, 사업내용이 같아 단일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표3】 및 【표4】와 같이 세분화하여 분할발주 하였으며, 그 결과 방침에서 전문업체로 정하지 않은 특정업종(조경 식재공사업)과 읍·면별 발주시기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수의계약 업체 현황(2018~2020년)

업체명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순 용역
업종		조경 식재 공사	조경 식재 공사	조경 식재 공사	조경 식재 공사	조경 식재 공사	나무 병원	나무 병원	나무 병원	나무 병원	나무 병원	산림 법인	산림 법인	산림 법인	산림 법인	개인	
업체수	62	22	5	4	3	3	1	5	3	2	1	1	5	4	1	1	1
비중	100	61.3%					19.4%					17.7%				1.6%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표4】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 현황(2018~2020년)

(읍면순, 단위 : 천 원)

연 번	발주부서	사업명	공사금액	계약일자	도급자	법인종류	소재지	사업량	비 고
1	○○○○과	2018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8,000	'18.03.19.	○○○○	나무병원	산청군	10주	
2	○○○○과	2018년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19,770	'18.05.21.	○○○○	나무병원	거창군	20주	
3	○○○○과	2019년 산연접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제거사업	18,400	'19.01.29.	○○○○	나무병원	진주시	2개소	
4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8,000	'19.02.01.	○○○○	나무병원	진주시	11개소	
5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6,500	'19.02.01.	○○○○	나무병원	산청군	9개소	
6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5,600	'19.02.01.	○○○○	나무병원	진주시	11개소	
7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6,400	'19.02.01.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15개소	
8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5,500	'19.02.01.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10개소	
9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6,400	'19.02.20.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21개소	
10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4,600	'19.02.01.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9개소	
11	○○○○과	2019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5,500	'19.02.01.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17개소	
12	○○○○과	2020년 산연접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제거사업	18,000	'20.02.25.	○○○○	나무병원	진주시	3개소	
13	○○면	○○면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3,300	'18.03.07.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32주	
14	○○면	주민불편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700	'18.06.19.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1주	
15	○○면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5,200	'20.04.06.	○○○○	나무병원	진주시	15주	
16	○○면	2018년 ○○면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4,100	'18.04.13.	○○○○	나무병원	산청군	20주	
17	○○면	2018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900	'18.08.20.	○○○○	나무병원	진주시	3주	
18	○○면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5,200	'20.03.12.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14주	
19	○○면	2020년 ○○면 관내 위험수목 제거사업	800	'20.03.20.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3주	
20	○○면	2018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7,100	'18.02.22.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22개소	
21	○○면	2019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0,000	'19.04.10.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15개소	
22	○○면	2020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4,700	'20.03.23.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10개소	
23	○○면	2020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9,654	'20.08.13.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7주	
24	○○면	2018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2,200	'18.07.12.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1주	
25	○○면	2019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700	'18.04.10.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1주	
26	○○면	2018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9,000	'18.03.12.	○○○○	조경식재공사	의령군	48주	

연 번	발주부서	사업명	공사금액	계약일자	도급자	법인종류	소재지	사업량	비 고
27	○○면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관내 전 지역)	10,000	'18.02.13.	○○○○	나무병원	진주시	10주	
28	○○면	2020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관내 전 지역)	14,787	'20.03.19.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27주	
29	○○면	2020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관내 전 지역)	10,000	'20.08.18.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28주	
30	○○면	2018년 ○○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16,000	'18.01.25.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식	
31	○○면	2019년 도로변 위험목 제거 사업	1,300	'19.12.24.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식	
32	○○면	2020년 ○○면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13,300	'20.04.01.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식	
33	○○면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면 14개소)	15,200	'18.03.1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307주	
34	○○면	2019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소하천 외 2개소)	12,480	'19.04.25.	○○○○	나무병원	진주시	11주	
35	○○면	2020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마을 외 2개소)	18,294	'20.08.25.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85주	
36	○○면	2018년 유곡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지구)	11,400	'18.03.2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96주 등	
37	○○면	2018년 유곡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지구)	3,000	'18.09.19.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3주 등	
38	○○면	2019년 유곡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지구)	8,000	'19.02.07.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4주 등	
39	○○면	2019년 유곡면 위험목 제거 및 보호수 받침목 설치(○○지구)	3,000	'19.07.17.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0주	
40	○○면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4,900	'20.03.18.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7주	
41	○○만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지구)	12,350	'20.08.06.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2주	
42	○○읍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16,100	'18.02.28.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53주	
43	○○읍	○○읍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 전정사업	900	'18.03.29.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식	
44	○○읍	2019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지구)	18,600	'19.05.14.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00	
45	○○읍	2019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지구)	9,800	'19.05.2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대나무 850m'	
46	○○읍	○○마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1,600	'19.05.23.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주	
47	○○읍	2020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 사업	16,000	'20.03.1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32주	
48	○○읍	2020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 사업(2차)	9,700	'20.07.24.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2주	
49	○○읍	2020년 생활주변위험수목 제거 사업(3차)	9,100	'20.09.18.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2주	
50	○○만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	16,000	'18.01.25.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1주	
51	○○만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2018)	13,100	'18.03.07.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6주	
52	○○만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2018 년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 (2018)	900	'18.07.20.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3개소	
53	○○만	2020년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14,250	'20.03.18.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73주	

연 번	발주부서	사업명	공사금액	계약일자	도급자	법인종류	소재지	사업량	비 고
54	○○만	○○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15,200	'18.02.1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8주	
55	○○만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8,600	'19.01.29.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3주	
56	○○만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2차)	3,900	견적시행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9주	
57	○○만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4,250	'20.04.01.	○○○○	산림사업법인	의령군	38주	
58	○○만	2020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2차)	12,350	'20.09.22.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5주	
59	○○만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지구)	13,300	'18.03.06.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0개소	
60	○○만	2018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지구)	700	'18.08.13.	○○○○	-	의령군	1주	
61	○○만	2019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지구)	14,000	'19.04.09.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24개소	
62	○○만	2020년 생활주변위험목 제거사업(○○지구)	15,000	'20.03.31.	○○○○	조경식재공사업	의령군	13개소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식재수량 미달 조림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의령군 ○○○○과에서는 2020년 조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 1. 23. ‘2020년 조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 3월 의령○○지구(○○○ ○○○○, 수의1인견적 계약), 의령○○지구(주식회사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지구(주○○○,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6차에 걸쳐 구매한 조립용 묘목 납품(검수)를 거쳐, 2020. 4. 3. 조립식재를 완료하였고, (주)○○○의 조립사업 감리용역과 준공검사공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2020. 4. 22. ‘2020년 조립사업 추진완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최종 준공처리하여 시공사에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후, 2020. 5월경 조립사업 식재수량이 부족하다는 민원 발생에 따라 【표5】 및 【표6】 과 같이 1~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재수량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처리 중에 있다.

【표5】 1차 현장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 5. 22. ~ '20. 6. 3.

○ 조사내용 : 식재본수 및 활착률 전수조사(완료)

○ 조사자 : ○○○○담당 등 2명

○ 조사결과 : 2020. 8. 18.(권한대행 방침 결재)

- 민원 제기에 따라 4개 필지 전수조사 결과 계획수량 대비 19.6%가량 식재수량 미달 확인
- (주)○○○ : 2,040본(26.15%) 정도 식재수량 미달(누락) 확인
- (주)○○○ : 540본(10.05%) 정도 식재수량 미달(누락) 확인

조사지	면적(ha)	수종	조사내용		증감		시공업체
			계획수량	확인수량	수량	증감률	
계	5.69		13,170	10,590	△2,580	△19.6%	
○○ ○○ 산○○○	2.10	편백	6,300	4,800	△1,500	△19.6%	(주)○○○
○○ ○○ 산○○○	0.50	편백	1,500	960	△540	△36.0%	(주)○○○
○○ ○○ 산○○○	2.60	편백	3,900	3,900	0	-	(주)○○○
○○ ○○ 산○○○	0.49	편백	1,470	930	△540	△36.7%	(주)○○○

【표6】 2차 현장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 8. 14. ~ '20. 9. 28.

○ 조사내용 : 식재본수 및 활착률 전수조사(완료)

○ 조사자 : ○○○○담당 등 13명(○○○○ 인력 : 11명)

○ 조사결과 : 방침 결재 전

- ○○○ ○○○○ : 489본(5.1%) 정도 추가 식재 확인
- (주)○○○ : 321본(6.8%) 정도 식재수량 미달(누락) 확인
- (주)○○○ : 2,490본(14.48%) 정도 식재수량 미달(누락) 확인

조사지	면적(ha)	수종	조사내용		증감		시공업체
			계획수량	확인수량	수량	증감률	
계	15.19		31,380	29,058	△2,322	△7.39%	
○○ ○○ 산○○○	5.00	편백	7,500	7,854	354	4.72%	○○○ ○○○○
○○ ○○ 산○○○	1.35	편백	2,025	2,160	135	6.66%	○○○ ○○○○
○○ ○○ 산○○○	3.11	편백	4,665	4,344	△321	△6.88%	(주)○○○
○○ ○○ 산○○○	1.50	편백	4,500	3,318	△1,182	△26.2%	(주)○○○
	2.50	편백	7,500	6,469	△1,031	△13.7%	
	1.73	편백	5,190	4,913	△277	△6.3%	

○ 결론 :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한 것으로 부실시공으로 판단

- 감리표준지(전체 사업장의 1% 내외) 조사 및 준공검사 시에는 표준지 조사(1% 이상)의 맹점으로 식재 누락을 발견하기 어려움.

이 과정에서 당시 실무선에서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식재목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추가 식재 우려 등으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과 ○○○은 내부적으로 미비점이나 흠결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조림지 풀베기 이후 활착조사 시에 조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는 【표5】와 같이 2020. 5. 22.~6. 3. 기간 중 5.7ha에 대하여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과 (주)○○○이 시공한 4개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계획수량 대비 19.6% 가량 식재수량이 미달함을 확인하였고, 8월 풀베기사업 이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

2020. 8. 14. ~ 9. 28. 기간 중 【표6】과 같이 실시한 2차 전수조사에서도 1차 조사에서 식재수량이 부족했던 2개 업체의 조림지에서는 18.2% 정도의 식재목 수량누락을 확인하였으나, ○○○ ○○○○에서 시공한 조림지의 경우는 오히려 5.1% 정도 추가 식재가 확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조림사업은 조림묘목을 관급자재로 식재수량을 공급하고, 시공사는 공급된 식재수량을 빠짐없이 식재하여야 하므로, 식재수량 부족은 부실시공에 해당하고, 조림묘목의 추가 식재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20년 조림사업 식재면적 52ha 중 1~2차 자체 전수조사 결과 20.88ha에서 계획수량 44,550본 대비 4,902본 (△11%)이 부족한 상태로 부실시공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계획서에서 “전문업체”를 일컫는 것은 일전에 읍·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사업(위험목 제거)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문업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전문업체란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목 처리 지원조례」의 전문업체를 말한 것은 아니고,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말함이고, 읍·면별 발주시기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준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위험수목의 사업 성질상 많은 경험을 요하는 작업으로 전문성이나 기술축적을 고려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묘목검수 등 감독 및 준공을 성실히 이행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하게 준공처리하였고, 부적정하게 부실시공된 점은 명백히 시공업체의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나, 우리부서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부정당업체 제재 및 보식 또는 환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령군에서는 조례 및 방침상 ‘전문업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조경식재공사업’ 업체와 대다수 수의계약을 하였고, 그 중 ○○○○○과는 전체 62건 중 22건(35.5%)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본청·읍·면으로 분산된 사업

지역의 수행 시기 또한 동일한 시기에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장대리인의 공사현장 중복으로 감독 소홀, 안전사고 등 부실시공의 우려를 방치하였고, ‘위험수목 제거사업’의 방침과 지시를 위반하여 ‘조경식재공사사업’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및 특정업체 편중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림사업의 경우도 현 제도상의 1% 표준지 조사는 조림지역내 봉분, 묘지, 암석지 등 묘목을 식재할 수 없는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식재간격이 좁아지고 밀식도가 높아지게 되며, 사업지역내 1% 표준지 조사를 할 경우 무조건 식재 수량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를 악용해 시행자들이 공급받은 묘목을 제 수량만큼 식재하지 않고 빼들려도 업무절차상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 지대와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

비록, 2020년 조림사업에서 묘목이 제대로 식재되지 않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관련자들의 업무소홀이나 과실은 확인할 수 없고, 표준지 조사의 맹점을 이용한 시행자의 부실시공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 표준지 조사로는 전체 조림면적의 정상적인 식재여부를 파악하기에 불합리하므로 ① 표준지 조사 면적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② 수종별 조림지 일부를 선정하여 묘목 전수 조사, ③ 표준지 상향 조정 및 수종별 조림지 일부 전수조사 병행 등의 방법으로 현재 지침상의 1% 표준지 조사를 제도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상의 1% 표준지 조사로는 전체 조림면적의 정상적인 식재여부를 파악하기에 불합리하므로, 대안으로 ① 표준지 조사 면적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② 수종별 조림지 일부를 선정하여 묘목 전수 조사,

③ 표준지 상향 조정 및 수종별 조림지 일부 전수조사 병행 등의 방법으로 조림사업 준공 시 표준지 조사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또한, 위험수목 제거사업 방침 수립시 ‘전문업체’를 혼선이 없도록 정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공사 발주시 특정시기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4급 승진임용 업무 등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에서는 매년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산정한 결원 수만큼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감사대상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 인사 시행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의령군 승진임용 인사 시행 현황

구분	결원 발생	승진예정인원 산정	인사위원회 심의	발령일자	비고
2017. 12. 18. 2017년 하반기 인사계획(안)	11명 (4급 2, 5급 3, 6급 2, 8급 4)	27명 (4급 1, 5급 4, 6급 6, 7급 6, 8급 10)	2017. 12. 26.	2018. 1. 1.	공로 연수 등
2018. 1. 19. 2018년 1월 수시 인사계획(안)	14명 (5급 1, 7급 2, 8급 11)	17명 (5급 1, 6급 1, 7급 3, 8급 12)	2018. 1. 24.	2018. 1. 29.	2. 21. 장기 교육 등
2018. 1. 30. 2018년 2월 수시 인사계획(안)	1명 (5급 1)	4명 (5급 1, 6급 1, 7급 1, 8급 1)	2018. 2. 2.	2018. 2. 6.	1. 29. 도 전출
2018. 3. 5. 2018년 3월 수시	1명 (6급 1)	3명 (6급 1, 7급 1, 8급 1)	2018. 3. 8.	2018. 3. 12.	2. 28. 명예

구분	결원 발생	승진예정인원 산정	인사위원회 심의	발령일자	비고
인사계획(안)					퇴직
2018. 3. 26. 2018년 4월 수시 인사계획(안)	2명 (6급 1, 7급 1)	3명 (6급 1, 7급 1, 8급 1)	2018. 3. 28.	2018. 4. 2.	3. 31. 명예 퇴직
2018. 7. 18.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4명 (5급 1, 6급 3)	17명 (5급 1, 6급 4, 7급 4, 8급 8)	2018. 7. 20.	2018. 7. 23.	명예 퇴직 등
2018. 9. 21.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2018년 10월 수시 인사계획(안)	조직개편 5급 3, 6급 이하 20, 연구사 1 증원/ 명예퇴직 6급 1	43명 (5급 3, 6급 7, 7급 14, 8급 19)	2018. 9. 28.	2018. 10. 4.	조직 개편, 명예 퇴직
2018. 12. 21.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2명 (5급 1)	5명 (5급 2_교육파견 1 포함, 6급 1, 7급 1, 8급 1)	2018. 12. 27.	2019. 1. 1.	공로 연수 등
2019. 2. 7.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2019년 2월 수시 인사계획(안)	4명 (5급 1, 6급 3)	12명 (6급 4, 7급 4, 8급 4)	2019. 2. 13.	2019. 2. 18.	2. 13. 교육 파견
2019. 6. 19.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13명 (5급 8, 6급 4, 7급 1)	36명 (5급 8, 6급 8, 7급 9, 8급 11)	2019. 6. 24.	2019. 7. 1.	공로 연수 등
2019. 12. 24.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12명 (4급 1, 5급 4, 지도관 1, 6급 2, 7급 2, 8급 2)	36명 (5급 6, 6급 10_근속 2 포함, 7급 10, 8급 12)	2019. 12. 26.	2020. 1. 1.	명예 퇴직 등
2020. 2. 28. 2020년 3월 수시인사 계획(안)	2명 (6급 1_근속, 8급1)	4명 (4급 1, 7급 1, 8급 2)	2020. 3. 5.	2020. 3. 7.	1. 31. 명예 퇴직 등
2020. 6. 12.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7명 (4급 1, 5급 3, 지도관 1, 6급 2)	29명 (5급 5, 6급 10_근속 3 포함, 7급 7, 8급 7)	2020. 6. 19.	2020. 7. 1.	명예 퇴직 등
2020. 8. 24. 2020년 9월 수시인사 계획(안)	2명 (7급 1, 8급 1)	4명 (4급 1, 7급 1, 8급 2)	2020. 8. 28.	2020. 9. 1.	7. 8. 도 전출

2. 국장 직위의 복수 직급(4·5급)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13조(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22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⁷⁾을 별표 3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기준⁸⁾ 역시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정원 총수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의령군은 조직개편에 따라 국을 설치하면서 합리적인 직급체제와 더불어 결원 발생에 따른 하위직급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례상 직급별 정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책정하여야만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7) 인구 15만 미만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1개 이상 3개 이하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4. 1.)

8)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의령군 ○○과에서는 2018. 2. 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2018. 4. 25.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계획”⁹⁾, 2018. 7. 11. “행정 조직개편 추진계획(안)”¹⁰⁾을 통해 2국·1과를 신설하고 정원 총수를 588명에서 613명으로 증원(25명)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8. 8. 2. 당초 2실·10과·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에서 2국·2관·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¹¹⁾과 함께 정원 총수를 612명(증 24)으로 하고 4급 2명(증 1), 4·5급 2명(감 1), 5급 35명(증 3), 6급 이하 549명(증 20), 연구사 4명(증 1)으로 조정하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¹²⁾을 작성한 후 군수까지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¹³⁾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2018. 8. 2.부터 8. 22.까지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당초 군수 방침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4급 2명(증 1), 4·5급 2명(감 1)으로 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국장의 직급기준을 4급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인사운영의 폭을 보다 늘리려는 이유로 별도 검토 및 방침 결재 없이 2018. 8. 23. 국을 신설하기 전과 같이 4급 1명, 4·5급 3명으로 정원을 기재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였으며, 2018. 8. 27.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담당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별도의 질의 없이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9) (○○과-9793호) 조직개편 개요(조직방향, 추진개요, 추진단계), 조직진단 실시 방침
- 담당자 ○○○, ○○담당 ○○○, ○○과장 ○○○, 부군수 ○○○(전결)

10) (○○과-15991호) 추진방향, 기구 및 정원 현황, 추진일정, 개편 계획 방침
- 담당자 ○○○, ○○담당 ○○○, ○○과장 ○○○, 부군수 ○○○, 군수 ○○○

11) (○○과-17610호) ○○담당 ○○○, ○○과장 ○○○, 부군수 ○○○, 군수 ○○○

12) (○○과-17607호) ○○담당 ○○○, ○○과장 ○○○, 부군수 ○○○, 군수 ○○○

13) (폐지) 2019. 6. 26. 훈령 제292호

정원 배정 규정」도 동일하게 4·5급 3명으로 제·개정 한 후 이를 근거로 2018. 10. 4. 조직개편에 따른 수시인사 시 ○○국장 직위에 행정5급 ○○○(2018. 10. 4. ~2019. 12. 31.), 2020. 1. 1. 상반기 정기인사 시 ○○국장 직위에 행정5급 ○○○, 2020. 7. 1. 하반기 정기인사 시 ○○○○국장 직위에 행정5급 ○○○을 각각 전보 임용함으로써 합리적이지 못한 직급체제를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2조를 위반하여 국장 직위에 대한 직급을 4·5급으로 정한 조례 등을 시행 중에 있다.

3. 승진예정인원 및 인사시기 조정을 통한 특정한 부당 승진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 승진임용 등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의령군은 정기인사 시 4급 결원 발생이 확정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하여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특정인의 승진을 배제하기 위해 승진 예정인원을 허위 또는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존의 인사관행을 벗어나서 특정 직급에 대해서만 승진 시기를 늦추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2018년 10월 수시~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의령군 ○○과에서는 2018. 9. 21. “2018년 10월 수시 인사계획(안)”¹⁴⁾을 수립하면서 당초 2실·10과에서 2국·2관·12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2개의 국장 직위가 발생하고, 당시 4급 현원이 3명¹⁵⁾ 뿐으로 국장 직위에 대한 4급 결원 1명이 발생함을 인지하고서도 4급 1명과 4·5급 3명으로 개정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이유로 승진예정인원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9. 28. 인사위원회에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이하 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승진인원을 포함한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전보임용 기준과 함께 5급 이하 승진임용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요구하여 인사위원회가 5급 이하 승진임용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8. 9. 28. “2018년 10월 수시인사 승진임용 계획(안)”과 2018. 10. 1. ○○○○○○과장 4급 ○○○를 ○○○○국장 직위에, ○○○○○○○ 행정5급 ○○○을 ○○국장 직위에 전보하는 내용의 “2018년 10월 수시인사 전보 및 신규 임용 계획(안)”¹⁶⁾을 수립하고 2018. 10. 4.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국장 직위의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승진인사가 이루어 졌다면, 당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행정5급 ○○○, 농업5급 ○○○, 시설5급 ○○○(2019. 1. 1. ○○○○), ○○○(2018. 2. 21.~12. 14. ○○○○)가

14)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부군수 ○○○, 군수 ○○○

15) ○○○ 부군수, ○○○ 주민생활지원실장, ○○○ 보건소장

16) (○○과-285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부군수 ○○○, 군수 ○○○

승진심사 대상이 됨에도, 4급 결원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4급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2019년 2월 수시인사,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도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4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행정5급 ○○○, 시설5급 ○○○ 등의 4급 승진임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배제하였다.

2)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및 3월 수시인사

의령군 ○○과에서는 2019. 12. 24.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안)”¹⁷⁾을 수립 하면서 명예퇴직에 따른 실제 4급 결원(보건소장 ○○○)과 공로연수에 따른 ○○ 국장 직위(행정5급 ○○○)의 4급 결원¹⁸⁾이 1명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위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4·5급 복수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결원을 5급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2019. 12. 26. 인사위원회에 4급 결원 발생현황이 포함된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전보임용 기준과 함께 5급 이하 승진임용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 인사위원회가 5급 이하 승진임용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16호¹⁹⁾를 근거로 당시 전보제한 대상자인 ○○○○○○○ 행정5급 ○○○을 포함하여 총 76명에 대해 전보심의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9. 12. 30.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와 함께 승진 및 행정5급 ○○○을 ○○국장 직위에 전보²⁰⁾하는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전보임용 계획

17)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군수 ○○○

18) ○○국장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19)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20) 전보사유 : ○○국장 행정5급 ○○○ 공로연수(2020. 1. 1.)

(안)”²¹⁾을 수립하고 2020. 1. 1.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이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한 직후(4년 2일²²⁾)인 2020. 2. 28. 세무6급 명예퇴직(2020. 1. 31.)과 시설8급 도 전출(2020. 1. 2.)에 따른 결원을 이유로 “2020년 3월 수시인사 계획(안)”²³⁾을 수립한 후 2020. 3. 5. 인사위원회에 4급 승진 사전심의를 요구하여 ○○○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이로써 정상적으로 2019. 12. 31.자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하여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행정5급 ○○○(2020. 1. 1. 공로연수), ○○○, 시설5급 ○○○ 3명이 승진심사 대상이 되고 행정5급 ○○○은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는데도, 임의로 4급에 대한 승진인사 시기만 3월로 늦추고 승진대상 직렬을 행정으로 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함으로써 ○○○이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국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²⁴⁾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또한, 행정5급 ○○○와 시설5급 ○○○는 정당한 4급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및 9월 수시인사

의령군 ○○과에서는 2020. 6. 12.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안)”²⁵⁾을 수립

21)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군수 ○○○

22) 행정5급 임용일 : 2016. 2. 26.

23)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군수 ○○○

24) 2020. 3. 5.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인사위원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갑자기 3월에 승진심사를 하는 이유를 질의하자 간사 ○○○이 4급 승진심사에 대한 별도 설명 없이 6급 근속승진에 따른 명예퇴직자와 경상남도 전출에 따른 결원 발생을 이유로 답했으며, 연이어 ○○○이 현재 ○○국장에 재임 중이며 여태까지 근속연수가 되지 않아 진급을 못한 것이냐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함. 이에 ○○○ 위원은 현재 ○○국장에 재임 중이며 승진요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로 추천함

하면서 공로연수에 따라 실제 4급 결원(○○○○국장 ○○○)이 1명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직위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4·5급 복수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결원을 5급 승진 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4급 결원 발생현황이 포함된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전보임용 기준과 함께 5급 이하 승진임용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 인사위원회가 5급 이하 승진임용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16호를 근거로 당시 전보제한대상자인 ○○과장 행정5급 ○○○을 포함하여 총 102명에 대해 전보심의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0. 6. 19.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보고”와 함께 승진 및 행정5급 ○○○을 ○○국장 직위에 전보²⁵⁾하는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전보임용 계획(안)”²⁷⁾을 수립하고 2020. 7. 1.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직후(4년 12일²⁸⁾)인 2020. 8. 24. 행정7급 및 농업8급 각 1명의 도 진출(2020. 7. 8.)에 따른 결원을 이유로 “2020년 9월 수시인사 계획(안)”²⁹⁾을 수립한 후 2020. 8. 28. 인사위원회에 4급 승진 사전심의를 요구하여 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이로써 정상적으로 2020. 7. 1. 공로연수자의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하여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행정5급 ○○○, 시설5급 ○○○ 2명이 승진심사 대상이 되고 행정5급 ○○○은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는데도, 임의로 4급에 대한 승진인사 시기만 9월로 늦추고 승진대상 직렬을 행정으로 정한

25)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26) 전보사유 : ○○○국장 4급 ○○○ 공로연수(2020. 7. 1.)

27)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28) 행정5급 임용일 : 2016. 8. 12.

29) (○○과-○○○○호)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부군수 ○○○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함으로써 ○○○이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국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³⁰⁾로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행정5급 ○○○와 시설5급 ○○○는 또다시 4급으로의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공정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2] 승진예정인원 및 인사시기 조정에 따른 4급 승진심사대상자 현황 비교

구분 (인사위원회 개최일)	정상적 업무처리		실제 업무처리		비고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대상	승진예정인원	승진심사대상	
2018. 9. 28.	1	행정5급 ○○○ 농업5급 ○○○ 시설5급 ○○○ 시설5급 ○○○	0	-	
2018. 12. 27.	1	행정5급 ○○○ 농업5급 ○○○ 시설5급 ○○○ ³¹⁾ 시설5급 ○○○ 시설5급 ○○○	0	-	
2019. 2. 13.	1	행정5급 ○○○ 농업5급 ○○○ 시설5급 ○○○ 시설5급 ○○○	0	-	
2019. 6. 24.	1	행정5급 ○○○ 농업5급 ○○○ 시설5급 ○○○	0	-	
2019. 12. 26.	1	행정5급 ○○○ 행정5급 ○○○ 시설5급 ○○○	0	-	
2020. 3. 5.	0	-	1	행정5급 ○○○ 행정5급 ○○○	시설 제외
2020. 6. 19.	1	행정5급 ○○○ 시설5급 ○○○	0	-	
2020. 8. 28.	0	-	1	행정5급 ○○○ 행정5급 ○○○ 행정5급 ○○○ 행정5급 ○○○	시설 제외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30) 2020. 8. 28.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인사위원이 7월 인사발령에 따라 ○○○ 과장이 ○○○○국장으로 전보되어 재직하고 있고 올 연말 퇴직함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로 추천함

31) 2017. 1. 6. 의령군 전입 / 2019. 1. 2. 경상남도 전출

1. 국장 직위의 복수 직급(4·5급) 운영 부적정 및 2018년 10월 수시~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승진예정인원 조정

의령군은 조직개편에 따라 국을 설치하면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별표 3에서 국장 직급에 대해 사전 검토하였으나 인력운용과 인사적체,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장 직급을 정원 조례 등에 4·5급 복수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실무담당자인 ○○○과 실무책임자인 ○○○과의 문답을 통해서도 법령상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고 국장의 직급기준을 4급으로 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가능한 인력재원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인사적체와 조직 전반의 사기를 고려하여 정원 조례 등에 4·5급 복수로 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무담당자 ○○○은 본인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원 조례상 4급 단수로 정할 경우 인사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4·5급 복수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담당계장과 협의한 후 군수까지 최종 결재를 통해 4·5급 복수로 정하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실무책임자 ○○○은 당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4급 승진대상자들을 군수에게 보고하자, 승진 가능한 인력재원이 열약하다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 4·5급 복수로 정하게 되었다고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의 주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 ○○○이 이후 4·5급 복수로 정한 조례 등을 근거로 2018년 10월 수시인사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상 4급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에도 ○○○국장 직위에 행정5급을 전보임용한 후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까지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반영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임용 업무를 지속 처리하였음을 볼 때, 상위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국장 직위를 4·5급 복수로 하여 정원 조례 등을 제·개정한 것은 당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승진

임용 대상자의 승진기회를 임의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실제, 실무책임자 ○○○은 문답을 통하여 4·5급 복수직위로 정하는 내용을 군수와 협의할 당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승진대상자가 ○○○, ○○○, ○○○, ○○○ 4명으로, ○○국장의 직위를 봤을 때 ○○○는 농업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를 맡고 있어서 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 ○○○는 각각 장기교육과 공로연수 예정으로 ○○○가 유일한 승진가능자로 판단 하였으나, ○○○가 ○○년생으로 인사적체와 조직 전반의 사기를 충분히 고려 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특정한 ○○○의 승진임용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원 조례상 4급이 아닌 4·5급으로 정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 국을 설치하면서 합리적인 직급체제와 더불어 결원 발생에 따른 하위직급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례상 직급별 정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책정하여야만 함에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례를 개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국장 직위가 4·5급 복수직위이며, 결원을 승진임용이 아닌 5급 전보로 결원을 보충한다는 사실과 ○○국장 결원을 5급 전보로 보충하지 않고 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행정5급 ○○○ 등이 4급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5급 이하의 승진심사만 진행하게 한 ○○○과 ○○○의 업무 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 제48조에도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승진예정인원 및 인사시기 조정을 통한 특정한 부당 승진

의령군은 2020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국장 직위에 4급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5급을 전보임용한 후 1월과 7월에 각각 발생한 7·8급의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지 않고 국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직후인 3월과 9월까지 연기한 후 4급 승진 임용과 함께 승진심사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2020년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시인사를 곧바로 시행할 수 없었으며, 국장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시점에서 임용권자의 수시인사 검토 지시가 있어 승진 인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의령군이 [표1]에서와 같이 2017년 하반기 인사(2018. 1. 1. 인사발령) 후 2018년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2018년 1월 수시, 2월 수시, 3월 수시, 4월 수시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2019년 2월에도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수시인사를 시행한 현황을 살펴보건대, 2020년 당해 연도만 정기인사를 시행한 직후라 수시인사를 곧바로 시행할 수 없었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수시인사 검토 지시로 4급 승진인사를 함께 시행하였다고 하나, 정기인사 당시 4급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자가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 5급 이하의 승진심사만 진행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5급으로 4년 이상 재직)가 경과되지 않은 행정5급 ○○○(○○년생, 2016. 2. 26. 5급 승진)과 ○○○(○○년생, 2016. 8. 12. 5급 승진)을 각각 전보임용한 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직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0조에 따라 4급으로 승진 임용한 업무 처리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 처리라 볼 수 없다.

2020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와 더불어 4급 승진심사 시기만 늦추어 3월, 9월 수시인사를 시행한 실무담당자 ○○○은 문답을 통해,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이미 행정5급 ○○○과 ○○○을 ○○국장과 ○○○○국장 직위에 배치하는 전보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4급 결원을 승진예정인원에 산정하지 않고 정기인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위원회에는 국장 직위에 대한 5급 전보임용과 4급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5급 이하 승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의 경우 본청 주요부서에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시 4급 승진임용 범위에 있던 ○○○, ○○○가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진술을 통해 정기인사 시 ○○○ 등 특정인의 승진 임용을 배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계획안을 검토하고 결재한 실무책임자 ○○○ 역시, 문답 시 4급 결원이 있음에도 승진예정인원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승진 대상자 중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어 배제하였고, 젊은 사람이 진급을 하면 향후 인사적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승진을 못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동일한 의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3월 수시인사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및 9월 수시인사계획을 검토하고 결재한 실무책임자 ○○○은 문답 시 ○○○ ○○과장으로부터 부군수와 군수의 지시를 전달받고 3월 수시인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도 ○○○ ○○국장이 ○○○○과 의논을 한 결과 ○○○○국장 직위에 ○○○ ○○과장을 전보 임용할 것을 전달하여 전보안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임용권자의 지시에 의하더라도 정기인사 시 인사위원회에 국장 직위가 4·5급 복수직위이며, 결원을 승진임용이 아닌 5급 전보로 결원을 보충한다는 사실과 함께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보충할 경우에는 행정5급 ○○○ 등이 4급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인사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5급 이하에 대해서만 승진심사를 진행하도록 한 ○○○, ○○○, ○○○의 업무 처리는 ○○○ 등 특정인의 승진임용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 제48조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의령군은 2017년 하반기부터 4급 승진심사 대상이 있음에도 4급 결원을 승진 예정인원에 반영하지 않고 5급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행정5급 ○○○, 시설5급 ○○○ 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경쟁력 확보, 무사안일주의 타파, 인사적체에 따른 인력운영, 국장 책무에 대한 전문성 등 다양한 조직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장의 직급을 4.5급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임을 답변하였다.

해당 이유와 함께 앞서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의 진술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의령군은 ○○○(○○년생, 2011. 10. 17. 5급 승진)와 ○○○(○○년생, 2013. 12. 23 5급 승진)를 국장 직위에 4급 승진 임용할 경우 퇴직 전까지 장기간 재직하게 됨으로써 다른 이의 승진기회가 상실되고 인사적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지적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 또는 예상결원이 있을 때 승진 임용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임용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의결하도록 한 것도 역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의 증대를 수반하는 반면, 보수 증가, 성취감, 능력 인정 등의 이유로 구성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결과 모두에 있어서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의령군은 특정인의 승진임용을 배제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정원 조례 등에 직급기준을 4.5급 복수로 정한 후 4명의 4급 현원을 유지하던

이전의 인사 관행³²⁾을 벗어나서 결원 발생 시 4급 승진예정인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2~3명의 4급 현원을 운영해 오고, 특히, 2020년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승진 임용할 수 없는 자를 정기인사 시 전보임용한 후 최저연수 경과 직후 수시인사를 통해 승진임용함으로써 그 절차와 결과 모두가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실무담당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무책임자는 임용권자의 검토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감독책임자 ○○○과 총괄책임자 ○○○은 본인의 4급 승진임용을 위해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음을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의령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을 개정한 후 특정인의 4급 승진임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배제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지방○○○○○ ○○○(현, ○○○○)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② 그리고 정기인사 시 4급 결원을 누락하여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전보임용한 후 수시인사 시 승진임용함으로써 특정인의 4급 승진임용 기회를 박탈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 실무책임자 지방○○○○○ ○○○, 지방○○○○○ ○○○(현, ○○○○○○○)은

32) 2018. 2. 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 4·5급 복수직급 운영 근거를 통해 기획감사실장 및 주민생활지원실장 직위에 4급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승진예정인원에 산정하여 승진임용함으로써 4명의 4급 현원(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을 지속 유지함.

※ (예외)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5급 ○○○의 전보임용과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기획감사실장 행정5급 ○○○의 전보 임용은 감사지적 사례와 동일하게 승진임용 대상자가 있음에도 당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실장 직위에 전보 임용한 후 수시인사 시 4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로 이 역시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판단됨.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또한, 인사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승진임용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 실무책임자 지방○○○○○ ○○○(현, 공로연수), 지방○○○ ○○○(현, ○○○○○○)과 행정국 총괄책임자 지방○○○○○ ○○○(현, 공로연수), 지방○○○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④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국장의 직급 기준을 4급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4급 승진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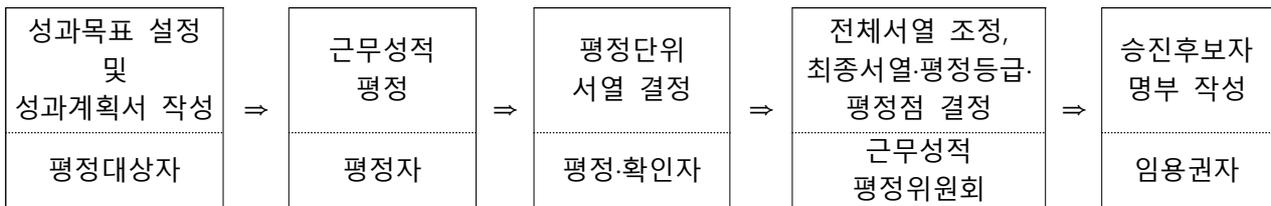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개요, 평정방법, 평정일정을 포함한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장과 읍·면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근평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평위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³³⁾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로부터 제출받은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의 기록으로 유지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적정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매년 직렬·직급별 또는 평정단위별 평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의 추천기준이나 지정기준 없이 5급 공무원과 6급

33)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가(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함.

이하 공무원의 평정위원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체 서열 조정과 최종 서열·평정등급 결정 시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순위를 조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순위조정에 대한 별도 심의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평정위원들이 ○○과에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표를 확인하고 의결서 1부에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최종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직급별 평정순위와 등급, 평가점을 기재하고 각 평정위원들의 서명과 서명날짜를 기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가 아니라 [그림2]와 같이 근평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간인이 없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의결서에 첨부하였으며,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에 대한 회의록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근평위 의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표1]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지정 내역

구분	5급 공무원 평정위원	6급 이하 공무원 평정위원
2017년 하반기	총 3명 부군수, 실장 2명(4급 2)	총 5명 부군수, 실장 2명(4급 2), 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2018년 상·하반기	총 3명 부군수, 국장 2명(4급 1, 5급 1)	총 6명 부군수, 국장 2명(4급 1, 5급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 상·하반기	총 2명 부군수, 국장(4급) 1명	총 6명 부군수, 국장 2명(4급 1, 5급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상반기	총 3명 부군수, 국장 2명	총 5명 부군수, 국장 2명,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림2] 근무성적평정표 및 의령군 근무성적평정안 비교

<p>5-3-3호 서식(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근무성적평정표</p> <p>○ 소속: ○ 대상직급: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평정 순위</th> <th style="width: 30%;">성명</th> <th style="width: 15%;">평정 등급</th> <th style="width: 40%;">평가점</th> </tr> <tr><td> </td><td> </td><td> </td><td> </td></tr> </table> <p>※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사이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비로 위·아래 평정점수 사이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p>※ 평정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소속</th> <th style="width: 10%;">직위</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5%;">성명</th> <th style="width: 15%;">서명</th> <th style="width: 10%;">날짜</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평정 순위	성명	평정 등급	평가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짜																									
평정 순위	성명	평정 등급	평가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의령군 근무성적평정표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과 다른 평정점 입력

의령군 ○○과에서는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근평위 의결에 따른 최종 서열과 평정등급, 평정점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만 함에도 [표9]와 같이 근평위 의결과 다른 평정점을 입력하여 1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2018년 상반기 근평위 의결과 다른 근무성적평정점 입력 현황

직렬·직급	연번	성명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고
			의결서	시스템	의결서 기준	시스템 기준	
행정5급	1	○○○	63.5	62.3	-	-	
	2	○○○	62.3	63.5	-	-	
행정·세무·전산 6급	1	○○○	64.8	64.4	7	7	
	2	○○○	64.4	64	14	14	
	3	○○○	64	62.9	23	23	

직렬· 직급	연번	성명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고
			의결서	시스템	의결서 기준	시스템 기준	
	4	○○○	62.9	62.6	21	21	
	5	○○○	62.6	64.8	18	16	2위 상승

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의령군 ○○과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는데도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표3]과 같이 ○○·○○ ○급 2명, ○○ ○급 2명의 평정점을 평정단위 서열 순위와는 다르게 부여하였다.

[표3] 2019년 상반기 평정단위별 서열 조정 현황

평정단위/직급	성명	평정단위 서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과/ ○○-○○ ○급	○○○	2	32	59.0
	○○○	3	31	59.3
○○○○국/ ○○ ○급	○○○	2	11	52.5
	○○○	3	4	63.5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 업무 처리를 해왔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근평위 의결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평정점을 입력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근평위를 성실히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의령군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등을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입력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이 부당하게 변경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평정점 또한 당초 평정단위별 서열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부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방법으로 [표1]과 같이 채용하였다.

[표 1] 임기제공무원 임용 현황

임용일자	소속	임용직급	성명	채용분야	비고
2018. 11. 21.	○○○○○○○○○○	행정7급	○○○	○○○○	
		시설8급	○○○	○○○○	
2019. 7. 1.	○○○○○○○○	행정7급	○○○	○○○○	3급 정확예사
	○○○	시간선택제 마급	○○○	○○○○○○○ 운영	간호사
			○○○		
			○○○		
			○○○		
			○○○		작업치료사
○○○	임상심리사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 호(1호~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 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령군에서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및 별표 5, 별표 5의2로 자격증 지정기준 및 자격증 구분표를 별도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³⁴⁾에 따른 임용 응시요건

계급	임 용 자 격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4)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4급 임용 응시요건 생략 기재

[표3]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³⁵⁾에 따른 임용 응시요건

계급	임 용 자 격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4급 임용 응시요건 생략 기재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를 살펴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경력경쟁임용요건·자격” 이외에 추가적인 자격제한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응시요건의 중복 제한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의 제1호에서 제9호 중 하나의 응시요건을 정하여 임용자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표4]와 같이 2019년 4월 ○○○ 행정7급에 대한 응시요건으로 제2호, 제9호를 동시에 모두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요건의 갖춘 자가 응시하도록 자격요건을 공고하였다.

나. 채용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자격요건 제한

의령군 ○○과에서는 “3급 정학예사”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자격요건이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재직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법 제27조제2항 제9호 임용 자격요건’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2019년 4월 ○○○ 행정7급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공고함으로써 최소한의 응시자만 응시하게 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자격요건으로 8급 이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요구함으로써 임상심리사의 경우 4차까지 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4] 자격요건 부적정 제한 내역

구분	직 급 (업무)	임용근거 (법조항)	자격요건	서류/면접 응시자수	비고
계	7명			13명/13명	
'19년 6월	지방행정 주사보 (○○○)	제27조 제2항 제2호,	○ 고고학, 역사학, 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1명/1명	*제2호, 제9호 동시적용

		제9호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 따른 정학예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정학예사 자격증 근거 부적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u>5급 채용 자격요건</u>
'19년 4월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감 (9급 상당)	제27조 제2항 제2호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8명/8명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 <u>8급 채용 자격요건</u>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재공고 실시)	3명/3명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4차 재공고 실시)	1명/1명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의령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을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법령 위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1차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의 경우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2차 이상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자 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도 교통정책과에서는 매월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 미달자 명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도 ○○○○○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통보한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 미달자 명단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의령군 ○○○○○과에서는 매월 도 ○○○○○과로부터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 미달자 명단’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조치를 하도록 【표2】 같이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표1】 과 같이 관련 공문을 접수만 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4명,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1명, 중대사고야기자 1명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화물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연번	성명	차량번호	사유발생일	위반내용	미처분 사항	비 고
1	---	-----	-----	운전면허 취소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2	----	-----	-----	운전면허 취소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3	----	-----	-----	운전면허 취소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4	----	-----	-----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5	---	-----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수검 안내 조치	
6	---	-----	-----	중대사고야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중상 1

출처) ○○군 제출 자료 재구성

【표2】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정보 활용안내

가.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자 명단 (경찰청자료 '20. 7. 27 기준 작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상이상(1명)의 교통사고 발생자 명단

※ 자료 활용

- 위반 차량 운행정지(10일 ~ 120일) 또는 감차조치
 - 법 제19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 시행령 [별표 1] 18.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임시검사를 명함(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43조)

나. 교통사고 또는 운전면허 취소자 명단 (경찰청자료 '20. 7. 27 기준 작성)

- 화물운송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 명단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예정)자 명단

※ 자료 활용

- 사망자 인원 및 중상자 인원에 따라 자격 정지 60일 ~ 90일, 자격취소
 -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
 - ♦ 시행규칙 [별표 3의2] 4., 7.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사 명단 (공단자료 '20. 7. 27 기준 작성)

-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미수검사 명단

※ 자료 활용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지도
 - 법 제19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 의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 시행령 [별표 1] 9., [별표 2] 2.
 - 법 70조제2항제3의2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과태료 50만원(령 [별표 5] 2. 라.)
 - ♦ 시행령 [별표 5] 2. 라.
 -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98(14.4.17)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사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경상남도 ○○○○과-○○○○○(2020. 8. 4.)

【표3】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사항

제공내역	내용	행정처분 사항
1.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미취득자 명단	- 법 제8조제1항3호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취소자 포함)	○ 화물법 시행령 제5조 ■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2.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사 명단	- 법 제8조제1항2호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미수검사	○ 화물법 시행령 제7조 ■ 과징금 : 60만원 ○ 화물법 시행령 제16조 ■ 과태료 : 50만원
3. 교통사고 또는 운전면허 취소자 명단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 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 게 한 운전자 및 도로교통 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예정)자	○ 화물법 시행규칙 제33조 ■ 종사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 1. 사망자 2명 이상 : 자격취소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자격정지 90일 3.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4.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격취소
4.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자 명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상이상(1명)의 교통사고 발생자	○ 화물법 시행령 제5조 ■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명 이상 : 감차조치 (보유차량 1/5대) - 5명 이상 9명 이하 : 감차조치 (보유차량 1/10대) - 3명 이상 4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2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2.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 10명 이상 : 감차조치(2대) - 5명 이상 9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명 이상 4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명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5. 교통법규위반 현황	-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 른 교통법규위반 현황 (벌점, 위반내용 등)	-
6. 운수회사 현황	- 법 제10조에 따른 운송사 업자 및 연합회(협회)에 관리하고, 공단에 제공한 운수종사자별 현황 정보	-

3.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이첩내역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는 본인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별표3] 에서는 이를 위반 시 행정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최대적재량 1.5톤 초과 : 일반 20만 원, 개별 10만 원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일반 20만 원, 개별 5만 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적발한 위반 차량이 처분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불법 밤샘주차 위반으로 적발한 차량이 타 시·군의 관할일 경우 적발통보서를 해당 관청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타 시·군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법규 위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 ○○○○○과에서는 【표4】 와 같이 타 시·군 등으로부터 불법 밤샘주차 위반으로 이첩되어 온 12건의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4】 불법 밤샘주차 단속 이첩내역 미처리 현황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첩기관	비고
1	-----	-----	2020.7.3. (00:10~02:04)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17번길	-----	
2	-----	-----	2020.6.20. (01:11~03:17)	경남 김해시 삼계동 화정초등학교 주변	-----	
3	-----	-----	2020.4.25. (00:45~02:41)	경남 김해시 장유동 장유스포츠센터 주변	-----	
4	-----	-----	2020.3.21. (00:09~01:4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	
5	-----	-----	2019.11.1. (00:54~02:0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행복주택 주변	-----	
6	-----	-----	2019.9.20. (00:21~01:39)	경남 김해시 삼정동 영진직업전문학교 앞	-----	
7	-----	-----	2018.11.30. (01:09~02:3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내트럭하우스~ 지앤지 물류센터 도로변	-----	
8	-----	-----	2018.11.27. (00:23~01:24)	경남 진주시 금산면 두산위브 정문 주변 도로	-----	
9	-----	-----	2018.9.19. (01:15~02:19)	해오름아파트 맞은 편	-----	
10	-----	-----	2018.9.2. (00:18~02:1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모라방면	-----	
11	-----	-----	2018.6.16. (01:00~02:0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솔모루성당 앞 도로	-----	
12	-----	-----	2018.6.5. (01:10~03:0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솔모루성당 앞 도로	-----	

출처) ○○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군 ○○○○○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담당업무 소홀로 책임있게 챙기지 못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위반으로 이첩된 차량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과 지방○○○○○ ○○○**와 실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운전면허 취소자 및 중대사고 야기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수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유기동물보호센터 정기 점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5] ‘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제2항에서도 도지사³⁶⁾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 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준수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완 등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센터의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의 구분 설치, 급수와 배수시설, 인도적 처리를 위한 수용시설과 독립된 처리공간 등의 시설기준과 동물의 보호상태, 소독 및 청소 상태, 동물보호 개체관리카드 작성, 동물의 인도적 처리와 관련된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17. 11월 ~ 감사일 현재) 동안 단 2회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정기 점검 현황

3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6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연번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1	2017년 (하반기)	미 실시	-
2	2018년 (상반기)	미 실시	-
3	2018년 (하반기)	미 실시	-
4	2019년 (상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시설기준 [별표5] 준수사항	- 시설 기준 (시정): 동물개체표지판 - 준수 사항 (적정): 방문자 대장비치 등 - 인도적처리(적정): 공고보호기간 등
5	2019년 (하반기)	미 실시	-
6	2020년 (상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시설기준 [별표5] 준수사항	- 시설 기준 (적정): 적정사육두수 등 - 준수 사항 (적정): 사체적정처리 등 - 인도적처리(적정): 공고보호기간 등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동물보호법」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군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소 시 센터의 운영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동물보호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고,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마취를 실시한 후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적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중 2. 개별사항 나목에 따라 동물보호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유기동물 입소 시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고, 동물보호 개체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하거나 인도적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센터의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센터에 입소 후 공고를 한 유실·유기동물 중 기증이나 분양 내역 또는 인도적 처리 내역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후 그 처리 결과가 파악되지 않는 유기견이 22마리로 확인되었고, 유기견 분양 관련 서류도 3건이나 분실되었으나,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과에서는 해당 사실을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유기동물 관리 부적정 내역

(단위: 마리)

연번	공고번호	축종	품종	보호관리 비용 지급일자	처리결과 미확인	비고
	계				22	

연번	공고번호	축종	품종	보호관리 비용 지급일자	처리결과 미확인	비고
	계				22	
1	-----	개	믹스	2018. 2. 26.	1	
2	-----	개	믹스	2018. 2. 26.	1	
3	-----	개	믹스	2018. 2. 26.	1	
4	-----	개	포메라니안 2, 미니핀 1	2018. 12. 18.	3	
5	-----	개	믹스	2019. 6. 27.	2	
6	-----	개	삽살개	2019. 6. 27.	10	
7	-----	개	진돗개	2019. 6. 27.	1	
8	-----	개	믹스	2019. 7. 1.		분양서류 분실
9	-----	개	믹스	2019. 7. 1.	1	
10	-----	개	믹스	2019. 11. 28.		분양서류 분실
11	-----	개	사모예드	2019. 12. 26.		분양서류 분실
12	-----	개	믹스	2020. 2. 28.	1	
13	-----	개	믹스	2020. 7. 31.	1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리고 인도적 처리비용 지급 건 중 3건의 경우 이미 분양 신청을 받아 분양 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해당 유기견이 인도적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3】 인도적 처리비용 부정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번	공고번호	축종	품종	부정지급 내용	지급금액
	계				90,000
1	-----	개	믹스	- 2018. 6. 28. 분양 처리(신청자: ○○○) - 2018. 9. 27. 안락사 처리 비용 지급	30,000
2	-----	개	라브라도 리트리버	- 2018. 9. 7. 분양 처리(신청자: ○○○) - 2018. 10. 2. 안락사 처리 비용 지급	30,000
3	-----	개	믹스	- 2018. 10. 2. 분양 처리 (신청자: ○○○) - 2018. 10. 2. 안락사 처리 비용 지급	30,000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을 시행한 후에는 안락사 사유, 입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동물보호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해당 사항 입력을 전부 누락하여 입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관리 소홀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448539201900001	1. 관리번호	448539202000001																																							
2. 구조정보	신고일 2019-01-24 신고자 의령소방서 구조장소 의령군	2. 구조정보	신고일 2020-01-03 신고자 정원식 구조장소 의령군																																							
3. 동물정보	종류 개 나이 4살 특징 특출없음	3. 동물정보	종류 개 나이 3살 특징 사린물 많이 경계함																																							
4. 보호동물 사진		4. 보호동물 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결과																																							
2019-03-06	<table border="1"> <tr> <td>반환 가능 기종</td> <td>이름</td> <td>주 소</td> <td>생년월일</td> <td>연락처</td> </tr> <tr> <td>[] 폐사</td> <td>[] 안락사</td> <td>사유</td> <td>확인자</td> <td>의령군</td> </tr> <tr> <td>[] 방사</td> <td>방사장소</td> <td></td> <td>확인자</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반환 가능 기종	이름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 폐사	[] 안락사	사유	확인자	의령군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기타					<table border="1"> <tr> <td>반환 가능 기종</td> <td>이름</td> <td>주 소</td> <td>생년월일</td> <td>연락처</td> </tr> <tr> <td>[] 폐사</td> <td>[] 안락사</td> <td>사유</td> <td>확인자</td> <td>의령군</td> </tr> <tr> <td>[] 방사</td> <td>방사장소</td> <td></td> <td>확인자</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반환 가능 기종	이름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 폐사	[] 안락사	사유	확인자	의령군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기타				
반환 가능 기종	이름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 폐사	[] 안락사	사유	확인자	의령군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기타																																										
반환 가능 기종	이름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 폐사	[] 안락사	사유	확인자	의령군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기타																																										
관리번호 448539201900001		관리번호 448539202000001																																								

출처) 의령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에서는 유기동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유기동물 관리·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타 시·군 모범사례를 조사하고, 동물보호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의령군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인도적 처리비용 지급 건 중 부정 지급된 3건의 경우 환수조치 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 등의 조치결과가 미확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인도적 처리 등을 시행한 후에는 인도적 처리 사유, 입회자 정보 등의 입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사의뢰·주의 요구

제 목 공무원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표1】 과 같이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표1】 2019년 ○○○○ 공무원 채용 현황

○ 채용공고 및 접수 : 2019. 00. 00. ~ 00. 00.(00일간)

○ 서류전형 심사결과

구분	채용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경쟁률
-	1	9	9	9:1

○ 면접시험 개요

- 일시/장소 : 2019. 00. 00. 14:00~ / 의령읍사무소 2층 회의실

- 면접위원 : 3명

- 응시인원 : 7명(면접 불참 2명)

○ 합격자 현황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	2019-000	aaa(○)	'00. 00. 00.	만00세	의령읍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가 담당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공무원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의령군 ○○○○과에서는 공무원근로자 신규 채용을 위해 2019. 00. 00.부터 00. 00.까지 00일간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를 시행하여 9명이 응시하였다.

서류전형 심사결과 응시자 9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해당 대상자들을 상대로 2019. 00. 00. 14시 의령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 총 9명 중 7명이 면접시험에 참가하였고, 면접위원 3명(A, B, C)이 면접시험 평정표(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별 20점 부여, 총점 100점)를 작성하여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하였다.

면접위원 A, B, C는 면접시험 응시자 aaa(접수번호 2019-000) 및 면접시험 응시자 bbb(접수번호 2019-000)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최초 평정하였다.

【표2】 aaa과 bbb에 대한 최초 평점점

구분	평가항목	계	면접위원 A	면접위원 B	면접위원 C
aaa (2019-000)	정신자세	54	16	20	18
	전문지식	30	10	10	10
	의사발표	46	15	18	13
	성실성	53	19	20	14
	직무적격성	43	12	18	13
	총점	226	72	86	68
bbb (2019-000)	정신자세	56	18	18	20
	전문지식	38	18	10	18
	의사발표	47	17	10	20
	성실성	49	19	10	20
	직무적격성	43	17	10	16
	총점	241	89	58	94

최초 평정 이후, 【표3】, 별첨 【그림1】 및 【그림2】 와 같이 면접위원 B의 평정표는 aaa의 전문지식 점수를 당초 10점에서 18점으로 수정되었고, 면접위원 C의 평정표는 bbb의 전문지식 점수를 당초 18점에 10점으로 수정되었다.

【표3】 aaa과 bbb에 대한 수정 평점점

구분	평가항목	계	면접위원 A	면접위원 B	면접위원 C
aaa (2019-000)	정신자세	54	16	20	18
	전문지식	38	10	18(10→18)	10
	의사발표	46	15	18	13
	성실성	53	19	20	14
	직무적격성	43	12	18	13
	총점	234(226→234)	72	94(86→94)	68
bbb (2019-000)	정신자세	56	18	18	20
	전문지식	38	18	10	10(18→10)
	의사발표	47	17	10	20
	성실성	49	19	10	20
	직무적격성	43	17	10	16
	총점	233(241→233)	89	58	86(94→86)

수정된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면, bbb(접수번호 2019-009)의 면접점수 총점이 241점에서 233점으로 8점 하향 조정되었고, aaa(접수번호 2019-001)의 면접점수 총점은 226점에서 234점으로 8점 상향 조정되었다.

응시자 2명의 면접시험 평정점은 【표4】 와 같이 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점

차이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4】 aaa과 bbb의 최초 평점 및 최종 평점

구분	최초 평점점	수정평점점	증감	점수차이	비고
aaa (2019-000)	226	234	8	최초 15점에서 최종 1점차이로 역전	최종 합격
bbb (2019-000)	241	233	△8		

[별첨]

【그림1】 면접위원 B의 면접시험 평정표

면접위원 B은 aaa에 대하여 최초 86점을 평정하였으나, **최종 94점으로 8점 상향 수정함**

【그림2】 면접위원 C의 면접시험 평정표

면접위원 C은 bbb에 대하여 최초 94점을 평정하였으나, **최종 96점으로 8점 하향 수정함**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 ○○○○과에서 시행한 공무원근로자 채용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면접위원 2명의 채점표가 수정된 것을 발견하였고, 수정 전·후의 점수를 취합해 본 결과 【표4】 같이 합격자가 15점 차이에서 1점 차이로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본 결과, 채용과정 중 범죄행위의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의령군수는 2019년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평정표를 부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에 대하여 부당한 채용업무 처리로 공무원근로자 채용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의뢰’ 하시기를 바랍니다.(수사의뢰)
- ② 아울러, 공무원 근로자 채용업무 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불법투기 방지 CCTV를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군수나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과태료를 감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18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75건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감경범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의 범위(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1,750만원의 과태료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과태료부과현황(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단위 : 천원)

번호	위반자	적발일시	감경 전 과태료	최종 부과 과태료	감경사유	비고
합계			3,500	1,750		
1	○○○	2018년	200	1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1호 다목 3)	
2	○○○	2018년	200	100	"	
3	○○○	2018년	200	100	"	
4	○○○	2019년	200	100	"	
5	○○○	2019년	200	100	"	
6	○○○	2019년	200	100	"	
7	○○○	2019년	200	100	"	
8	○○○	2019년	200	100	"	
9	○○○	2019년	200	100	"	
10	○○○	2019년	200	100	"	
11	○○○	2019년	200	100	"	

12	○○○	2019년	200	100	"	
13	○○○	2019년	200	100	"	
14	○○○	2019년	200	100	"	
15	○○○	2019년	200	100	"	
16	○○○	2019년	200	100	"	
17	○○○	2019년	200	100	"	
18	○○○	2019년	200	100	"	
19	○○○	2019년	200	100	"	
20	○○○	2019년	200	100	"	
21	○○○	2019년	200	100	"	
22	○○○	2019년	200	100	"	
23	○○○	2019년	200	100	"	
24	○○○	2019년	200	100	"	
25	○○○	2019년	200	100	"	
26	○○○	2019년	200	100	"	
27	○○○	2019년	200	100	"	
28	○○○	2019년	200	100	"	
29	○○○	2019년	200	100	"	
30	○○○	2019년	200	100	"	
31	○○○	2019년	200	100	"	
32	○○○	2019년	200	100	"	
33	○○○	2019년	200	100	"	
34	○○○	2019년	200	100	"	
35	○○○	2019년	200	100	"	
36	○○○	2019년	200	100	"	
37	○○○	2019년	200	100	"	
38	○○○	2019년	200	100	"	
39	○○○	2019년	200	100	"	
40	○○○	2019년	200	100	"	
41	○○○	2019년	200	100	"	
42	○○○	2019년	200	100	"	
43	○○○	2019년	200	100	"	
44	○○○	2019년	200	100	"	
45	○○○	2019년	200	100	"	
46	○○○	2019년	200	100	"	
47	○○○	2019년	200	100	"	
48	○○○	2019년	200	100	"	
49	○○○	2019년	200	100	"	
50	○○○	2019년	200	100	"	
51	○○○	2019년	200	100	"	
52	○○○	2019년	200	100	"	
53	○○○	2019년	200	100	"	

54	○○○	2019년	200	100	"	
55	○○○	2019년	200	100	"	
56	○○○	2019년	200	100	"	
57	○○○	2019년	200	100	"	
58	○○○	2019년	200	100	"	
59	○○○	2019년	200	100	"	
60	○○○	2019년	200	100	"	
61	○○○	2019년	200	100	"	
62	○○○	2020년	200	100	"	
63	○○○	2020년	200	100	"	
64	○○○	2020년	200	100	"	
65	○○○	2020년	200	100	"	
66	○○○	2020년	200	100	"	
67	○○○	2020년	200	100	"	
68	○○○	2020년	200	100	"	
69	○○○	2020년	200	100	"	
70	○○○	2020년	200	100	"	
71	○○○	2020년	200	100	"	
72	○○○	2020년	200	100	"	
73	○○○	2020년	200	100	"	
74	○○○	2020년	200	100	"	
75	○○○	2020년	200	100	"	
76	○○○	2020년	200	100	"	
77	○○○	2020년	200	100	"	
78	○○○	2020년	200	100	"	
79	○○○	2020년	200	100	"	
80	○○○	2020년	200	100	"	
81	○○○	2020년	200	100	"	
82	○○○	2020년	200	100	"	
83	○○○	2020년	200	100	"	
84	○○○	2020년	200	100	"	
85	○○○	2020년	200	100	"	
86	○○○	2020년	200	100	"	
87	○○○	2020년	200	100	"	
88	○○○	2020년	200	100	"	
89	○○○	2020년	200	100	"	
90	○○○	2020년	200	100	"	
91	○○○	2020년	200	100	"	
92	○○○	2020년	200	100	"	
93	○○○	2020년	200	100	"	
94	○○○	2020년	200	100	"	
95	○○○	2020년	200	100	"	

96	○○○	2020년	200	100	"	
97	○○○	2020년	200	100	"	
98	○○○	2020년	200	100	"	
99	○○○	2020년	200	100	"	
100	○○○	2020년	200	100	"	
101	○○○	2020년	200	100	"	
102	○○○	2020년	200	100	"	
103	○○○	2020년	200	100	"	
104	○○○	2020년	200	100	"	
105	○○○	2020년	200	100	"	
106	○○○	2020년	200	100	"	
107	○○○	2020년	200	100	"	
108	○○○	2020년	200	100	"	
109	○○○	2020년	200	100	"	
110	○○○	2020년	200	100	"	
111	○○○	2020년	200	100	"	
112	○○○	2020년	200	100	"	
113	○○○	2020년	200	100	"	
114	○○○	2020년	200	100	"	
115	○○○	2020년	200	100	"	
116	○○○	2020년	200	100	"	
117	○○○	2020년	200	100	"	
118	○○○	2020년	200	100	"	
119	○○○	2020년	200	100	"	
120	○○○	2020년	200	100	"	
121	○○○	2020년	200	100	"	
122	○○○	2020년	200	100	"	
123	○○○	2020년	200	100	"	
124	○○○	2020년	200	100	"	
125	○○○	2020년	200	100	"	
126	○○○	2020년	200	100	"	
127	○○○	2020년	200	100	"	
128	○○○	2020년	200	100	"	
129	○○○	2020년	200	100	"	
130	○○○	2020년	200	100	"	
131	○○○	2020년	200	100	"	
132	○○○	2020년	200	100	"	
133	○○○	2020년	200	100	"	
134	○○○	2020년	200	100	"	
135	○○○	2020년	200	100	"	
136	○○○	2020년	200	100	"	
137	○○○	2020년	200	100	"	
138	○○○	2020년	200	100	"	
139	○○○	2020년	200	100	"	
140	○○○	2020년	200	100	"	
141	○○○	2020년	200	100	"	

142	○○○	2020년	200	100	"	
143	○○○	2020년	200	100	"	
144	○○○	2020년	200	100	"	
145	○○○	2020년	200	100	"	
146	○○○	2020년	200	100	"	
147	○○○	2020년	200	100	"	
148	○○○	2020년	200	100	"	
149	○○○	2020년	200	100	"	
150	○○○	2020년	200	100	"	
151	○○○	2020년	200	100	"	
152	○○○	2020년	200	100	"	
153	○○○	2020년	200	100	"	
154	○○○	2020년	200	100	"	
155	○○○	2020년	200	100	"	
156	○○○	2020년	200	100	"	
157	○○○	2020년	200	100	"	
158	○○○	2020년	200	100	"	
159	○○○	2020년	200	100	"	
160	○○○	2020년	200	100	"	
161	○○○	2020년	200	100	"	
162	○○○	2020년	200	100	"	
163	○○○	2020년	200	100	"	
164	○○○	2020년	200	100	"	
165	○○○	2020년	200	100	"	
166	○○○	2020년	200	100	"	
167	○○○	2020년	200	100	"	
168	○○○	2020년	200	100	"	
169	○○○	2020년	200	100	"	
170	○○○	2020년	200	100	"	
171	○○○	2020년	200	100	"	
172	○○○	2020년	200	100	"	
173	○○○	2020년	200	100	"	
174	○○○	2020년	200	100	"	
175	○○○	2020년	200	100	"	

출처)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에 따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를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2.일반기준 다목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18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75건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감경범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의 범위(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과태료 1,750만원을 과소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령군 ○○○○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웠으며, 고령자가 많고 소득이 높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상 최대한의 범위에서 감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감경하고자 할 때에도 법규에서 정하는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는 수집하면서도, 그 과태료처분을 감경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웠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행위별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자 임의로 단순히 소득이 적은 농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의령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실무책임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운수업계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 보전으로 버스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버스업체 경영 개선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표1】 과 같이 운수업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1】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내역(유가보조금 제외)

(단위 : 백만 원)

연도	계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예산과목 :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운행결손보조금 (예산과목 :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예산과목 : 운수업계보조금)			
		소계	도비	군비	소계	도비	군비	소계	도비	군비	
	보조 사업자	○○○○			○○○○			○○○○, ○○○○, ○○○○, ○○○○			
		4,484.5	1,876	238.1	1,637.9	399.2		399.2	2,209.3	311.5	1,898.3
2017		1,072.6	285.5	51.1	234.4	96.6		96.6	690.5	82.6	607.9
2018		1,245.7	558	59.7	498.3	114.9		114.9	572.8	83.5	489.4
2019		1,345.2	632.5	104	528.5	108.7		108.7	604	80.1	524.2
2020		821	400	23.3	376.7	79		79	342	65.3	276.8

2. 버스재정지원금 실적보고 미제출 및 정산검사 미 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8제3항, 「지방회계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의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운수업체 보조금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로 보조금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등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는 운전자 인건비, 연료비 지급 등 경영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버스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을버스 운행 결손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단 한 차례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을버스 운행결손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원한 2,608백만 원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이 운전자 인건비, 연료비 등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심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

3. 재정지원금 등 회계처리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버스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출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에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마을버스 운행결손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법인이 관리하는 지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법인 지출 계좌에서 각종 보조금, 인건비, 수입금 등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집행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재정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는 있으나, 단 한 건의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조금 업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향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이 5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았다는 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른 책임소재 정도 등은 신분상 조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의령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를 위반하여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현, ○○○○과), ○○○○과 지방○○○○○○○○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절차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개선요구

제 목 권역별 농촌개발사업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00군(000000관)
조 치 기 관 00군(000000관)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에서는 2015~2020년까지 권역단위 일반농촌개발사업을 【표1】 과 같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사회 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사업 준공이후 00군 소유의 시설들을 각 권역별 00법인에게 관리·위탁 운영하고 시설유지비로 7개 권역에 50백만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표1】 권역별 일반농촌개발사업 현황

사업명	권역별	위탁자	소재지	준공일	사업비 (단위 : 억 원)	시설유지 운영
권역단위 일반농촌 개발사업	000000 다목적회관	0000	00면 000	2016. 00. 00.	00	매년 50백만 원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등)
	000권역	0000	00면 000	2013. 00. 00.	00	
	000권역	0000	00면 000	2015. 00. 00.	00	
	000권역	0000	00면 000	2017. 00. 00.	00	
	000권역	0000	00면 000	2017. 00. 00.	00	
	000권역	0000	00면 000	2017. 00. 00.	00	
	000권역	0000	00읍 000	2019. 00. 00.	00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 미 제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따라서, 00군에서는 농촌개발사업으로 시행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민간인에게 위·수탁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00군 000000관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7개의 권역별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지역별 농업법인에게 위·수탁 관리하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이 5년임에도 000권역, 000권역은 10년으로 위·수탁하고 있으며,

000권역은 2021년도 관리기한이 도래되어 갱신계약을 하여야 하고, 000권역은 현재 위·수탁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마련이 조속히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위·수탁하여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

【표2】 권역별 농촌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사용현황

권역별	위탁자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당초 사용현황	사용현황	비고
000000 다목적회관	0000법인	2019.7.1. ~2024.6.30.	5년	농촌체험랜드 다목적회관	오토캠핑장 (이용료 징수)	
000권역	0000법인	2014.4.3. ~2024.4.2.	10년	들찬마을센터, 건강테마공원, 천통테마공간	농촌체험, 숙박 (이용료 징수)	5년임에도 10년 위·수탁
000권역	0000법인	2015.9.9. ~2025.9.8.	10년	마을센터, 마을회관, 공동홈	농촌체험 (이용료 징수)	5년임에도 10년 위·수탁
000권역	0000법인	2016.7.1. ~2021.6.30.	5년	다목적홀, 체험관	식체험관, 카페 (이용료 징수)	2021년 계약 만료
000권역	0000법인	2018.6.27.~ 2023.6.26.	5년	도농교류센터, 체험장	농촌체험, 숙박 (이용료 징수)	
000권역	0000법인	2018.9.17.~ 2023.9.16.	5년	활성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음식체험장	공장 체험장숙소 (이용료 징수)	
000권역	0000법인		추진중	감체험장, 활동방		계약 추진중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유재산 위·수탁(사용허가) 시 절차 없이 무상허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 할 수 있으며,

「00군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에서는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³⁷⁾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37)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³⁸⁾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00군수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00군의회에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 수탁자에게 무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00군 000000관에서는 2017년에서 2020년 감사대상 기간 중 000000회관(0000), 000 권역(0000법인), 000권역(0000법인), 3개의 권역별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지역별 농업법인에게 위·수탁하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 조례 제정, 의회 동의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하고,

아래 【표3】 과 같이 권역별 마을체험센터를 이용하여 3개의 농업법인이 오토캠핑장 및 숙박시설, 체험장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사용료가 발생됨을 인지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 하고 있다.

【표3】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미동의 현황

권역별	위탁자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당초 사용현황	사용현황	비고
0000회관	0000	2019. 7. 1.~ 2024. 6. 30.	5	0000회관	오토캠핑장 (이용료 징수)	의회 동의 없이 무상사용
000권역	0000법인	2018. 6. 27.~ 2023. 6. 26.	5	도농교류센터, 체험장	농촌체험, 숙박 (이용료 징수)	
000권역	0000법인	2018. 9. 17.~ 2023. 9. 16.	5	활성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음식체험장	공장, 체험장, 숙소 (이용료 징수)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38) 00군 공유재산 조례, 개별조례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 000000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관한 조례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의 사례를 보고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제정 및 무상 사용허가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00 000, 00과 지방0000 000(현, 0000과), 실무책임자 00과 지방0000 000(현, 0000과), 00과 지방0000 000(현, 00과)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00군에서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및 무상의 근거(위탁료 감면) 등이 명확히 마련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③ 앞으로 관련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0000회 행사관련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과)

조 치 기 관 00군(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과에서는 「00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00제전’ 행사에 790백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행사기간에 「000가요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000가요제」를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지원하여 0000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표1】 000전 행사 추진 개요

(단위 : 천 원)

보조사업자	행사기간	사업명	과 목	편성액	행사 내용
계				990,000	
0000회	4.18~4.21 (000전)	000전	민간행사보조금	610,000	각종 체험행사 00축제
			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민간행사보조금 (군금고협력 사업비)	15,000	행사준비물
			민간행사보조금	50,000	00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5,000	깃발 제작
		000가요제	민간위탁금	200,000	가요제 수상자음반제작

※ 0000회 : 00군수(대표), 각 협회단체장 및 읍·면장 등 60여명으로 구성, 사무처장 2명

2. 000가요제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이며,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³⁹⁾ 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편성·운영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 외 5개 편성목⁴⁰⁾), 행사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통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00군에서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성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행사축제 예산도 총액한도제 기준 내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39) 보조금 총액 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국·시·도비 보조금 제외한 순지방비

40)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6개)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군 00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000가요제'를 추진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2억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민간위탁 기관은 0000회로 선정하여 00제전 행사 시기와 동일하게 개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내 편성하여야 할 민간 주관 행사성 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지자체별 행사·축제성 경비의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의 목적을 벗어난 변칙적 예산지원이다.

3. 00제전 수익금 등 정산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회계연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 31.) 집행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정산 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75호, 2019.5.28.시행)에는 보조단체 등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00군에서는 행사로 인해 발생 될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수입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군 00과에서는 ‘2018년 경상남도 행사·축제 특정감사’ 결과 ‘00제전’ 수익금이 발생됨에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내에서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재투입하거나 00군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아래 [표2] 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행사로 인한 수익금 및 협찬금 00,000천 원을 00군 승인 없이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0000회에 상근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사업을 정산 조치하였다.

【표2】 00제전 수익금 등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수입금				부적정 현황	
			계	내용	행사 수입금	협찬기관		협찬금
2019년	4. 18~4. 21	0000회	38,260	소계	23,260	소계	15,000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처장 2명) 운영비로 지출
				00행사	21,000	00은행	10,000	
				기타수입	2,260	0000	3,000	
						0000	2,000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00군 0000회는 00군수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 기금,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00군에 실질적인 지위·통제를 받는 단체이므로, 자발적 기탁의 경우라도 행사에 따른 행정목적의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00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군 00과에서는 아래 【표3】 과 같이 2019년 ‘00제전’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0000회(대표 : 00군수)가 관련 행사 후원의 명목으로 00은행에서 10,000천 원, 등 총 3건에 기부금 15,000천 원을 접수하고도 00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3】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사 미실시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대표자	협찬금 (협찬기관)	집행금액	지출내용
계					15,000	
2019년	4.18~4.21	0000회	00군수 (000)	00은행	10,000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0000	3,000	
				0000	2,000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 00과에서는 앞으로, ‘000가요제’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겠으며 수익금을 보조금 변경신청 및 정산 시 내역 제출을 통해 정산을 철저히 하고, 협찬금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000가요제’ 행사에 따른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하고, ‘00제전’ 수익금에 대한 정산업무,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사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00 000(현, 00면), 실무책임자 00과 지방0000 000(현, 0000과)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또한, ‘000가요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시 행사성 사업경비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00제전’에 따른 수익금은 교부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보조행사에 따른 기부금품은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접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 관련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지원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해 보조금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과)

조 치 기 관 00군(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과에서는 0000법인에서 신청한 「000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 8. 2일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어 아래 표와 같이 49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에, 0000법인(대표 000)은 자부담 210백만원을 포함한 700백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00과에서는 2019. 8. 12. 정산 완료하였다.

【표1】 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	사업비						신청일 (지체선정일)	교부결정 정산일
			계	교부액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018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0000법인 (대표자 000)	700	490	210	63	217	210	2018.8.2	2018.11.26. 2019.8.12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의 참여요건에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시 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있어야 하고, 1억 원 이상의 총출자금과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당해 법인 명의 소유로 등기된 사업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원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인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신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업법인의 경우는 지원요건에 적합한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군 00과에서는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응모 신청시 농업경영정보 등록, 조합원 구성, 총출자금, 운영실적 등 자격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조합원이 5인이 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0000법인(대표 000)을 공모사업 대상자로 추천 응모하여 요건 미충족 사업자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2】 자격요건 미충족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	사업비			지원요건별 충족여부		부적정 현황
				계	보조금	자부담	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 충족	출자금 1억원 이상 충족	
2018	00과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0000법인 (대표자 000)	700	490	210	5명중 3명이 비농업인	충족	농업경영체 미등록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 00과에서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
면서도 공모 사업자는 농림부에서 실사와 평가를 통해서 직접 선정한 것이라는
점과 본 사업 유치로 지역 스마트 영농기법을 조기에 도입하여 선진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2018년 000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처
리한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 00과 지방0000 000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
니다. (훈계)
- ②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자격 미충족 법인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연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0000법인은 조속히 농업법인 요건을 갖추어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
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 관련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기술지도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과, 00소)

조 치 기 관 00군(00과, 00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과와 00소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였다.

【표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회계	사업명	사업기간	도금액	도급자	지급일
	총 계	2건		2,716,817		
00과	특별회계	공모지구 준직영 골채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2019. 8. 28.~ 2020. 6. 22.	2,399,177	(주)00 000	2020. 5. 26.
00소	특별회계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2019. 5. 2.~ 2019. 7. 30.	317,640	(주)00건설	2019. 8. 20.

출처) 00군 감사자료 재구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원⁴¹⁾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41) 부칙<2019-64호, 2019.12.13.>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항목은 ①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②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안전보건관리자, 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자의 안전보건 진단비,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③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과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2항에서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는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8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이 사용기준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00군에서는 공모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외 1건 사업을 정산하면서 목적 외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 목적 외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88천 원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부당청구 등 사용불가 내역
계			2건	49,310	6,388	
		소 계		43,630	5,488	
00과	공모지구 균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19. 8. 27.~ '20. 5. 20.	(주)00 000	43,630	2,060	건설기계 안전도검사
					628	안전로프(와이어로프) 구입
					200	약품구입(간이영수증)
					2,600	준설선 학원 수강료
		소 계		5,680	900	
00소	00 친환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공사	'19. 5. 2.~ '19. 7. 30.	00건설 000	5,680	900	컨테이너 임대료

출처) 00군 감사자료 재구성(제경비 미 포함)

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미시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서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에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00군 00과에서는 골재채취 대행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지도기관에 산업재해예방지도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교육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에서는 목적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공모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와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00과 실무담당자 지방 0000 000(현, 00과)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공모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않은 도급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 『공모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5,288천 원, 『00 친환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공사』 900천 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직무교육 강화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흔계·주의 요구

제 목 00학습관 위탁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과)
 조 치 기 관 00군(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과에서는 안정적인 곤충관리와 체계적인 전시콘텐츠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00학습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 00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던 (주)00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자 곤충 관리 및 전시 콘텐츠 구축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00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000, 000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을 포함한 7명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다시 (주)00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표】 00군 00학습관 위탁운영관리 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입찰 및 낙찰방식	사업기간 (위탁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구성근거	제안서 평가방식	평가위원 7명 중 소속 공무원 인원
00군 00 학습관 위탁운영관리 용역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6. 2. 1~ '19. 1. 31 (3년)	997,662 (연 332,554)	(주) 00	00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명(000, 000과장, 000과장)
		'19. 2. 1~ '22. 1. 31 (3년)	1,048,005 (연 349,335)				3명(000, 00과장, 000과장)

*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절 1.가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⁴²⁾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00과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00과에서는 3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일상감사 대상인 10억원의 00학습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로 하고도 계약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 없이 입찰을 추진하여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00군 협상에 의

42)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

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00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7조(기피·제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이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집행자는 해당하는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시에는 소속 공무원을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척하여야 하고,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00과에서는 2016년과 2019년에 00학습관 위탁 관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00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근거로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는 소속 공무원(3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한 뒤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야 함에도 입찰참가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이 심사위원 3명을 추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을 구성하면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공고 시 평가점수 미공개를 공지하여 제안서평가 후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정량평가 세부항목 배점한도 초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에 의하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하며,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00과에서는 【표2】와 같이 제안서 정량평가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세부평가 항목이 35%로 반영하여 정량평가 배점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2】 00학습관 위탁 관리용역 제안서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정량】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분야, 곤충담당 등급/실적 (곤충관련 석박사 등)	7	20		
		.업무 수행실적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연관 기술 보유	2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			
	사업수행 계획평가 (60) 【정성】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과업의 이해도 .업무수행계획 .전시시설 운영계획 .유리온실 운영계획 .품질관리의 적절성	25	60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	.00군 곤충산업과 00학습관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 .관람객 유치를 위한 기타 추가 제안	20			
		.수익극대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00군 예산절감을 위한 수익창출 방안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운영비 절감 방안 등	15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일차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20		

*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00군 00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데 업무 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면서 위탁 계약 업무 추진에 부적정한 점을 인정하면서 추후에는 관련 조례를 철저히 숙지하여 위원회 선정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00군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계약방식을 답습하는 등 계약업무 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주사보 000(현, 00과)과 실무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00과 지방00사무관 000(현, 00사업소)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 이행 및 확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소속 직원의 배제, 평가항목 배점한도, 보안 각서 징구, 평가위원의 명단 공개 등 계약체결기준이 준수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불용물품 처분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과, 00과)

조 치 기 관 00군(00과, 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00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2018년, 2020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 하였다.

【표1】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단위 : 천점)

연도	장부상총재물	현품 실사결과				비고
		총재물	가액(억원)	초과품	부족품	
2018	00	00	000	-	-	
2020	00	00	000	-	-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00군에서는 보유 중인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처분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표2】 불용물품 처분내역(물품관리시스템 등록내역)

처분물품	처분기간	처분방법			비고
		매각(수익)	폐기	기타(보관 등)	
00종 0,000점	2018. 3. 2 ~ 2020. 9. 16	차량 00대 (00,000,000원)	00종, 0,000점	00종, 00점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00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①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③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장비의 부속품, ④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⑤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⑥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⑦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 결정한 물품으로 ① 매각대금이 매각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김이 없을 때, ② 매수인이 없을 때, ③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을 폐기하는 경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불용 결정을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을 결정하고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용품의 처분은 1단계 매각, 보존, 재활용, 2단계 양여, 3단계 해체 또는 폐기의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군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

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불용 대상물품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00과장)이 일괄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물품의 상태확인을 통해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 시 매각절차를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매각은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공개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절차 이행 후에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의 망실, 훼손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불용물품 처분 절차 미이행 및 물품관리시스템 일괄 폐기 등록

그런데도 00군 00과에서는 2018년, 2020년 정기재물조사 후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해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 객관적인 확인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일괄 폐기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불용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00과장)이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분토록 하여 00과에서 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등)를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물품관리시스템 일괄 폐기 등록 내역

2018년 재물조사 후		2020년 재물조사 후		비고
물품개수	총 취득가액	물품개수	총 취득가액	
00점	00,000천원	000점	000,000천원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붙임1]

나. 불용물품(전산장비 등) 매각 검토 없이 폐기처분, 매각수의 상실 초래

또한 00군 00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불용품[컴퓨터 000대(폐기준비 00대 포함), 모니터 00대]을 처분하면서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매각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폐가전무상수거센터에 일괄 폐기 처분하여 약 0,000천 원*의 매각수익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산정기준 : 2019년 경상도 불용물품 처분 시 감정평가액 (컴퓨터 2만원/1대, 모니터 3천원/1대)

【표4】 컴퓨터 및 모니터 폐기 내역

연 도	2018년	2020년	폐기준비
폐기(해체)	컴퓨터 000, 모니터 00	컴퓨터 000, 모니터 00	컴퓨터 00대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 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불용물품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전산장비의 경우 내부자료,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전문가적 지식이 있거나 물품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에 대하여 별도 물품관리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00군 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내외 고물상 및 컴퓨터 업체에 매각관련 문의를 하여 유상 수거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과 향후 불용물품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00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불용물품을 매각하지 않고 폐기하여 매각수익을 상실하게 한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00 000(현, 0000과)과 00과 지방0000 000,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00과 지방0000 000(현, 0000과), 00과 지방0000 000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교량 재 가설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 재 가설사업」은 2019.12.21. ○○시 소재 ○건설(주)(대표 ○○○)와 도금액 1,171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2.23. 착공하고 2019.12.30. 총괄 1회 설계변경으로 도금액 1,334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0.12.31.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계약 시 미리 예측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증가 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 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은 발주된 공사를 추진하던 중 설계도서와 현장이 상이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 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추가공사로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은 본 공사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량하류부 제방 승상을 위한 실정보고 내용에 대해 「실시설계 시 미 반영된 접속도로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상위계획의 홍수량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접속도로 설치반영이 적정」 하다고 검토한 후 공사비 약 ○○○,○○○천 원을 증액하여 제체 성토계획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설계 변경한 교량 하류부 제방승상 및 접속도로 설치구간은 본 교량 가설구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시공구간일 뿐 아니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므로 설계변경이 아닌 신규공사로 별도 발주하였어야 했다.

또한, ○○과에서 설계 변경한 제방 승상구간은 ○○군 ○○○과에서 현재 시행중인 ○○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업계획구간으로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과다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금회 발주구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지구 일대 미 정비된 ○○천 구간의 하천정비 마무리를 위하여 2021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하천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된 설계변경 도서와 같이 시공할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제체 성토만 시공하게 됨으로써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 시공된 제방 및 접속도로를 제거한 후 하천폭을 확장하여 제체를 재시공한 후 호안보호공 및 농로를 추가 시공하여야 하는 등 사업비가 중복으로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부

족으로 미 반영된 ○○교 하류제방의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체성토만 계획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나 제체성토계획이 ○○천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고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계를 변경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업비 이중투입 방지를 위하여 제방승상계획을 본 공사내역에서 제외하는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사업 시행 전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 그 사유가 지방계약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사업비가 낭비되도록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계획한 ○○과 실무담당자 ○와 실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설계 변경하여 증액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속히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당하게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기반시설(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미 이행
소 관 기 관 ○○군(00과)
조 치 기 관 ○○군(00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건설·관리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법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 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제1항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 10,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에 따라 해당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도로노선을 지정하거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고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은 「○○지구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2건의 기반시설(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로노선을 지정하거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하여 그 내용을 공고(고시)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으로 저촉되는 농지·산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법령으로도 별도 협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기반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변경되는 노선 및 도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없이 공사를 착수하여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반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군은 업무연찬 부족으로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업무숙지 및 법적검토 등을 하지 못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관련지침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비롯한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와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 없이 사업을 발주한 ○○과 실무담당자 ○○○와 실무담당자의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노선지정절차를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누락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설치사업」은 2019. 6.28. ○○시 소재 ○○건설 (대표 ○○○)과 도금액 ○○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7. 5. 착공하고 2022. 8.25.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 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

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여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 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 따르면 수급인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 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는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토공사와 상하수도공사를 ○○시 소재 ○○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하여 평가받은 10점을 포함하여 적격심사 평점 95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에 하수급예정자로 기재한 토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억 ○만 원이고 상하수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억 ○만 원인 B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⁴³⁾, 토공사는 ○○, 상하수도공사는 ○○에게 각각 하도급하기 위한 하도급관리계획(변경)사항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군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수급인인 ○○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 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8억 ○○만 원이고, ○○의 상하수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억 ○○만 원으로서 당초 하수급예정자였던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적은 업체일 뿐만 아니라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과 지급자재를 합한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은 ○○억 ○○만 원(토공사)과 ○○억 100만 원(상하수도공사)으로 각각 하도급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수급예정자의 자격조건보다 낮은 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등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43) B는 자재수급 애로 및 자금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시행 포기각서를 제출함

발주청인 ○○군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획한 하수급예정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 계약하겠다고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에 대해 하도급 관리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첨부하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함으로써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위반하여 당초 하수급예정자보다 시공능력이 낮은 회사들과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하도급관리계획과 상이한 하도급계약체결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실제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심사일 (연월)	하도급 할 공사	하수급 예정자 (시공능력평가액)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 공 사	하도급 계약금액 (지급자재)	실 하도급자 (시공능력평가액)	
00 설치사업 [○○건설]	6,740,260	'19. 6.	토공사	○○건설 (4,252,793)	'19. 8.29. ('19. 9.17.)	토공사 (총체분)	1,534,400 (-)	○○건설 (816,630)	·당초 계획한 하수급 예정자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낮은 업체와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함 ·하도급계약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음
			상하수도 공사	○○건설 (4,514,375)	'19. 8.29. ('19. 9.17.)	상하수도 (총체분)	2,823,442 (994,793)	○○건설 (1,427,778)	

※ 자료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군은 업무연찬 미숙 및 경험부족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행단계별로 필요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에 위반되게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승인 하여 당초 계획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적은 회사들과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과 실무담당자 ○○와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 ○○○○○○○○○○○○○○○○○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 ○○○)
조 치 기 관 ○○○군(○○○○○○,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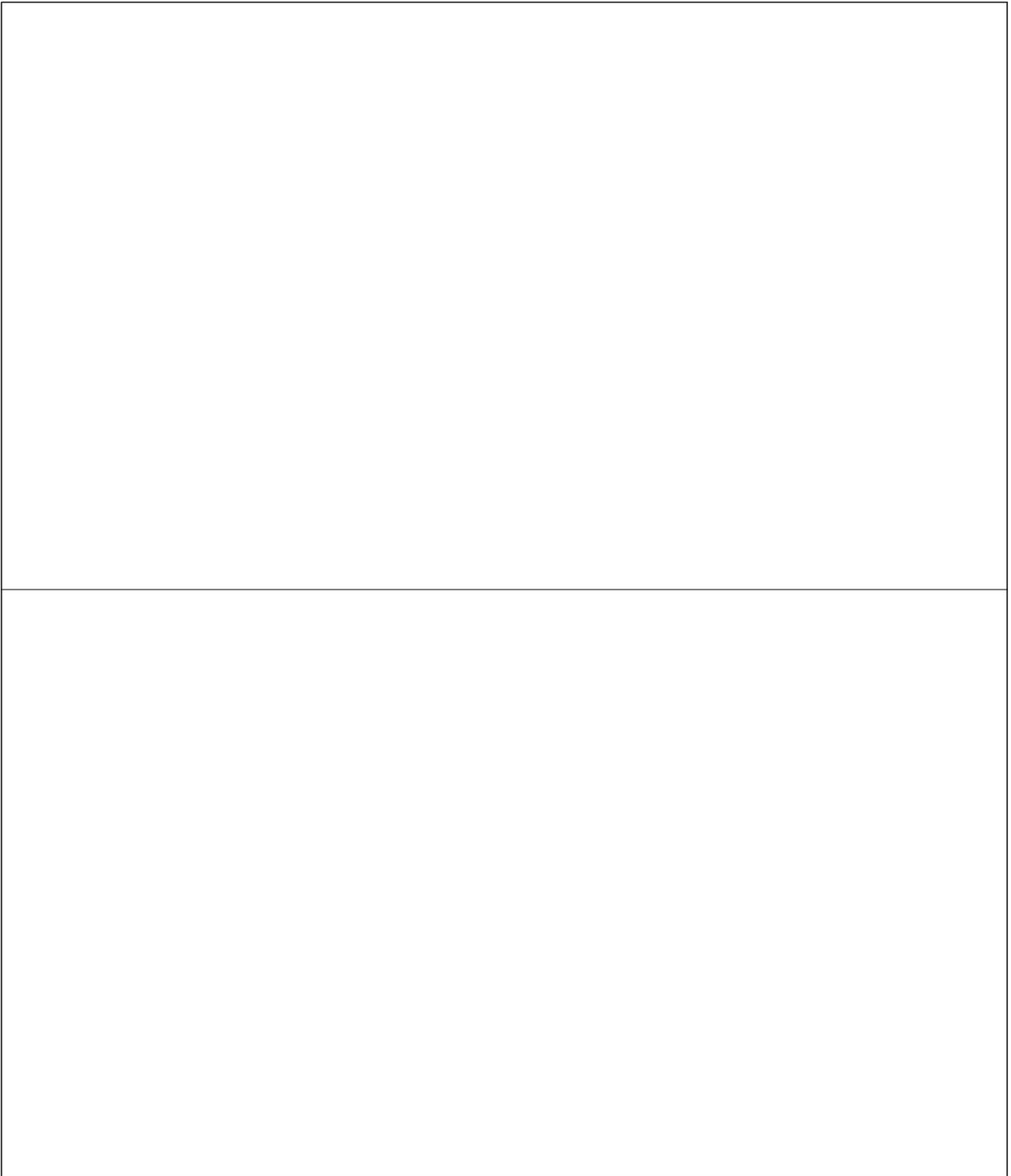
○○○에서는 2012년부터 ○○생태, ○○, 문화,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 ○○ 자원과 ○○○○ 기능의 통합을 위해 2021년까지 300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확보하여 [표 1]과 같이 ○○○ ○○○○○○○○○○○○○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 1] ○○○ ○○○○○○○○○○○○○ 조성계획 【○○○○○○-○○호(2017.12.26.)】

[표 2]와 같이 ○○○○(주) 대표 ○○○ 외 8개 업체와 2016. 4. 26. ○○○ ○○ ○○○○○○○○○(건축, 토목, 조경 등) 조성사업 외 5건 22,752백만 원을 계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입로 조성공사, ○○○ ○○○○○○○○○○○○○ 조성사업 본공사를 2019년말 준공하였고, ○○○○ 23동은 별도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 ○○○ ○○○○○○○○○○○○○ 조성사업 발주 내역

[그림 1] ○○○ ○○○○○○○○○○○ 조성사업 조성도(전체)



2. ○○○○○○○○○ 조성사업 분할계약금지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총칙-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나.에서는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총칙-5. 분할계약의 금지-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분할계약의 금지-라.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성계획에 따라 완료하였으며, ○○○ ○○○○○○○○○○○(건축, 토목, 조경 등)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본공사를 2019년말 준공하였으나, 체험단지 진입도로는 설계완료 이전에 별도 분할 발주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 ○은 본공사 준공 이후에 별도 분할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계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전 ○○○○○ ○○○은 ○○○○○○○○○○○ 조성계획과 실시 설계에서 반영된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분리하여 실시설계준공(2015.12.23.) 이전인 2015.4.6. 시행하여, 2017.9.24.에 준공하였으며,

○○○ ○의 경우에는 ○○○○○ 조성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 ○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2016년 본 공사 발주시에 ○○○ ○은 당시 경량철골조, 목구조로 설계되어 관급자재로 총괄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획에 따라 조성사업 총괄공사와 따로 발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총괄공사에서 ○○○ ○ 대상지에 대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 되면 조달청에 물품으로 구매 할 계획으로 ○○○ ○ 조성(관급자재)을 제외하고 총괄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해당공사의 기초금액(총공사금액)을 ○○○ ○ 공사금액(관급자재 30억 원)을 포함한

금액인 250억 원을 적용하여 2015.5.28. 조달청에 용역비 15.4억원으로 계약의뢰 하여 2015.10.1. (주)○○○○○○ 등 4개 업체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시행한 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42,600천 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주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2018.1.29. 후임자인 ○○○○○ ○○○은 ○○○○○○○○○○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 인수를 받았으며, ○○○ ○에 대하여 발주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 ○은 별도 사업으로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고,

2018.11.7. 조성계획에 따라 ○○○ ○(21동)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 ○이 구조상 불안하다는 이유로 당시 ○○○○○장(○○○)으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외 3개사)에 설계검토를 요청하여 설계내역 및 구조안정성에 대하여 검토 후 당초 설계사인 (주)○○○○○○ 외 1개사에 보완 지시하여 설계사로부터 ○○○ ○에 대한 최종내역서를 제출 받아 사업 발주를 추진하였으나 또다시 ○○○○○장으로부터 구조상(기초지반, 하부기초) 안전, 내부 구조상 이동 동선 검토 등의 사유로 설계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 ○ 구조상 안전, 설계적정성 판단을 위해 ○○○ 공공건축가를 임명하여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019.7.30. 공공건축가(○○○○건축사 ○○○)로부터 ○○○ ○ 구조부분 및 기타 내역조정으로 해당건물에 대한 기초 구조는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에도 ○○○○○장이 수차례 구조상 안전, 설계적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2019.8.12. ○○○ ○ 보완사항(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용역계획을 검토하고, 2019.8.16. ○○○ ○ 보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중간보고 시에도 ○○○○○장은 철골구조에 대한 구조상 불안을 사유로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 검토 지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용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공사발주

또한 지연되었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건축비가 최초 설계 2,973백만 원에 비해 788백만 원이 증가된 3,761백만 원으로 최종 설계되어 발주하게 되었다.

○○○ ○은 당초 ○○○ 11동, ○○○ 10동으로 총 21동에 전체 건축면적 764.02㎡에 2,973백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 5동, ○○○ 9동, 카라반 8동으로 총 14동에 전체 건축면적 590.7㎡에 3,761백만 원으로 건축 동수 및 건축물 구조 변경(경량철골조→철근콘크리트) 등 시공방식 변경으로 당초 관급자재 설치도에서 일반건축공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 ○ 일반동(11동) 및 단체동(1동)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기간에 발주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사업관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 ○ 건축비 30억 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42,60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 일반동 및 단체동을 별도로 시행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8,90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 조성사업 공사('16.5.3.~'19.12.16.) 및 건설사업관리용역('15.10.1.~'19.12.31.) 전체 준공 후에 ○○○ ○ 일반동 및 단체동 건축공사를 분리발주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비 37,50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분할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1,245,400	1,126,400	△119,000	
건설사업관리용역	○○○ ○ 제외에 따른 감리비 제외	1,169,000	1,126,400	△42,600	불필요
○○○ ○ 실시설계용역	당초 설계포함	38,900	-	△38,900	예산낭비
○○○ ○ 건축감리용역	당초 감리용역에 포함	37,500	-	△37,500	예산낭비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2. ○○·○○시설 조성계획 변경 미 이행

○ 조성계획(변경) 승인 내역

구 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단위	수량	면적(㎡)	비 고	
합 계					2,282,300		
시설면적					54,576		
숙박 시설	소 계				3,612		
	○○○ ○	1-1	○○○ ○ (○○○)	동	11 → 9	2,375	조성계획 미이행
		1-2	○○○ ○ (○○○)	동	10 → 5	1,237	조성계획 미이행
		1-3	○○○ ○ (단체동)	동	0 → 1	-	조성계획 미이행
		1-4	○○반	동	0 → 8	-	조성계획 미이행
편익 시설	소 계				28,401		
	캠핑장	2-1	캠핑장	ea	12	2,593	-
		2-2	물놀이장	식	1	596	-
	관리시설	2-3	○○○○	동	1	3,016	시공여건반영
		2-4	관리소	동	1	982	시공여건반영
	지원시설	2-5	주차장	식	1	4,802	규모증설
		2-6	진입도로	M	427	4,279	시공여건반영
		2-7	관리도로	M	1,312	5,791	시공여건반영
		2-8	○○레일	M	934	2,616	○○사 추가
	산책 탐방로	2-9	등산로	식	1	2,384	시공여건반영
2-10		○○드	식	1	1,342	시공여건반영	
체험· 교육 시설	소 계				21,757		
	체험·교육 시설	3-1	○○○놀이터	식	1	1,723	시공여건반영
		3-2	○○무대	식	1	1,166	시공여건반영
		3-3	숲○○장	식	1	1,294	○○ ○○이 삭제
		3-4	○○교실	개소	2	485	시공여건반영
		3-5	○○타워	식	1	1,024	신설
		3-6	○○스터	M	1,899	11,522	신설
3-7		○○벤처	식	1	4,543	신설	
안전 시설	소 계				640		
	재해예방시설	4-1	우수저류지	식	1	640	-
위생 시설	소 계				166		
	오수정화시설	5-1	오수처리시설	식	1	166	규모증설 및 이동
녹지면적					2,227,724	시설증가로 감소	

가. ○○○○○ 조성계획수립 관련

「○○문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을 말한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으로 지정된 ○○○에 ○○○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조성사업」을 위한 ○○○ ○○○○○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경상남도 ○○○○○-○○○○(2017.○○.○○.)호로 변경 승인 받아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상기 조성계획(변경) 승인 내역과 같이 변경 및 추가되는 숙박시설인 ○○○ ○ 일반동의 동수 변경과 단체동 및 ○○○반 추가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3.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는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 관리시설인 ○○○○ 측면도와 다르게 외벽면(옹벽)의 경사도가 다르고 토공 및 마감재 처리가 되어있지 않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보완 등 조치없이 준공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 미시공 현황

< 측면도 >	< 전경사진 >
---------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 관련자 ○○○○○ ○○○○○ ○○○○○○○ ○○○(현 ○○○○)의 문답결과 고의성은 없고, ○○○ ○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지반이 단단하지 않아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수차례 재검토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위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② 관계기관 의견

○○○의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로서 ○○○ ○○○○○○○○○○○ 조성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 한 ○○○○○ ○○○○○장 ○○○○○○○ ○○○(현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에 대하여 당초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여 경량철골조, 목구조로 설계되어 관급자재로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되어 있었음에도 ○○○ ○(관급자재)을 제외하고 총괄공사를 맡주한 사실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초금액(총공사금액)을 ○○○ ○ 공사금액(관급자재 30억원)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시행한 결과 42백만 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주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전까지 정산이나 ○○○ ○을 발주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은 설계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구조상 (경량철골조, 하부기초) 불안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 ○장의 지위로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건축감리를 각각 분할계약 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비 및 건축감리용역비 76백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위반, ○○·○○시설 조성계획 변경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 ○○○○○ ○○○○○○○ ○○○(현,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② ○○○ ○○○○○○○○○ 조성사업에 대하여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하고, 실시설계용역비 및 건축감리용역비 76백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고,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보완 등 조치없이 준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현, ○○○○○)과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 ○○○○○○○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 ○○○○○ 조성계획과 다르게 변경 및 추가되는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 측면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 조치계획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 추진 중인 「○○○ ○○○○ 복원사업」은 2018.11.20. ○○○ 소재 ○○○○(주) 대표 ○○○와 1개사와 도금액 12,425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고 같은 해 11.28. 착공하고 2020. 6.15. 총괄 2회 설계변경하여 도금액 13,437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1.11.26.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 복원사업		○○○○ L=6.48km	21,642	13,437	8,205	'18.11.28. ~ '21.11.26.	○○○○(주) 대표 ○○○	48%

2. 비관리청 하천공사 변경인가 미이행 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기

본계획에는 하천기본계획 목표,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계획 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그 경계 등) 등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1%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하폭 축소 등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6.15. 설계변경(총괄2회, 2차분3회)시 도급사 ○○○○(주)으로 부터 접수된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보고하면서 NO.57+7~NO.61+3(○○○ 하류부, 가동보 좌안)의 가동보 좌안 옹벽시공 상단부의 기존 돌망태가 노후되어 부분적인 부식 및 훼손이 되어 기능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미관상 불량하다는 사유로 비탈면보호 식생매트 설치 L=183m(A=1,413m²), 줄떼 A=456m²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보고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상기 검토의견서를 접수 후 승인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도면 등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하폭 64.4m인 제방을 제외지 측으로 8.0m 정도 하폭을 축소(12.4%) 하도록 설계도서를 부적정하게 검토·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은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검토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평면도 - 하천기본계획 폭 축소	계획하폭 축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1% 초과하여 축소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등 하천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리 하천관리청(○○도)과의 협의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천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8.0m정도 하천단면을 축소(12.4%)하여 시공하였으며, 하천의 하폭 축소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 ○○○○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용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계약 시 미리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은 「○○○ ○○○○ 복원사업」의 공사구간 연장 6.48km 내에 기존 호안공 붕괴 및 치수 불안정 구간(L=183m)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준해 식생매트 시공을 추가하기 위해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하여 전체 약 56백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시행하였다.

따라서, ○○○은 ○○○ ○○○○ 복원사업의 호안공법 변경 및 신규물량 추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현장여건에 호안공에 대한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검토없이 공사비 약 56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 ○○○○ 복원사업 설계변경 추가분 현황도

당초	변경

[표 1] 총괄 2회 설계변경 현황 (2020. 6.12.)

(단위 : 천 원)

당 초			변 경 (2회)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증 액	
○○○○복원 L=6.48km	계	21,149,985	○○○○복원 L=6.48km + 고수호안 추가 L=183m	계	21,642,022	계	492,037
	도급	13,245,774		도급	13,437,000	도급	191,226
	관급	7,904,211		관급	8,205,022	관급	300,811
부당 증액금액							
						계	56,140
						도급	34,100
						관급	22,040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4. 시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 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 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여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 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 따르면 수급인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 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복원사업」의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은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 소재 (주)○○○○(대표 ○○○)에 하도급 하는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하여 평가받은 12점을 포함하여 적격심사 평점 95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에 하수급예정자로 기재한 토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⁴⁴⁾이 194억 5,658만 원이고 구조물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74억 4,169만 원인 (주)○○○○(대표 ○○○)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⁴⁵⁾, 토공사는 기준○○○○○(주), 구조물공사 및 석공사업은 ○○○○(주)에 각각 하도급하기 위한 하도급관리계획(변경)사항을 ○○○○○ 제19-17호(2019. 3.18.)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경유하여 ○○○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수급인인 ○○○○(주)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주)의 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23억 6,705만 원이며, ○○○○(주)의 구조물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19억 7,568만 원이고,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없던 석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19억 3,280만 원으로서 당초 하수급예정자였던 (주)○○○○○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적은 업체일 뿐만 아니라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과 지급자재를 합한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은 23억 6,705만 원(토공사)으로 하도급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수급예정자의 자격조건보다 낮은 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등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청인 ○○○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획한

44)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

45) (주)○○○○○은 자재수급 애로 및 자금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시행포기각서를 제출함

하수급예정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 계약하겠다고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서에 대해 공문을 접수하고 하도급관리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 통보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위반하여 당초 하수급예정자보다 시공능력이 낮은 회사들과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관리계획과 상이한 하도급계약체결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실제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심사일 (연월)	하도급 할 공사	하수급 예정자 (시공능력평가액)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 공사	하도급 할 금액 (지급자재)	실 하도급자 (시공능력평가액)	
○○○ ○○○ 복원사업	12,434,970	'19. 3.	토공	주○○○○ (19,456,577)	'19. 3.26. ('19. 4.18.)	토공사 (총체분)	3,421,000 (-)	기준○○○○○(주) (2,367,000)	·하도급계약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음
			구조물공	주○○○○ (7,441,692)	'19. 3.26. ('19. 4.18.)	구조물공 (총체분)	534,600 (495,578)	○○○○(주) (1,975,688)	·○○○ 승인 없이 계획된 하수급 예정자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낮은 업체에 하도급
			석공	-	'19. 3.27. ('19. 4.18.)	석공 (총괄분)	1,459,700 (785,435)	○○○○(주) (1,932,803)	·하도급계약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높음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5.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같은 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내용과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는 「○○○ ○○○○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자연형여울 가물막이 구간은 현장의 여건상 ○○2보, ○○3보의 경우 Back Water(보 위 고이는 물)가 없는 구간으로 하류부 가물막이 설치 불필요하여 약 46,500천 원 정도 예산절감 요인이 있으며, ○○2 낙차공 신설을 위하여 기존 낙차보(철근콘크리트) 깨기가 적용되어 있으나 낙차보 수량산출 산식 오류(281㎡→2,812㎡)로 콘크리트깨기 수량 과다산정 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여 약 374,390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 요인이 있는 등 도합 약 420,890천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행 하는 등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593,770	172,880	△420,890	
생태복원공	여울공 가물막이 하류부 제외	177,900	131,400	감46,500	불필요
부대공	○○2낙차공 철근콘크리트깨기 물량 오류(281㎡→2,812㎡)	415,870	41,480	감374,390	과다산정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계상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 ① ○○○ ○○○○ 복원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변경)를 미이행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정한 하천의 하폭을 축소하여 하천기본계획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과 ○○○○○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 시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현, ○○○)과 ○○○○○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현,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여울공 가물막이 하류부 제외, ○○2낙차공 철근콘크리트깨기 물량 오류 등에 대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공사비 420,890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하천통수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하천관리청에 하천공사 허가(변경)를 이행하는 등 「하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 추진 중인 「○○○○○○ 개설사업」은 2020.3.24. ○○○ 소재 (주)○○○○○○ 대표 ○○○와 도금액 ○○백만 원에 계약체결하고 같은 해 3.27. 착공하여 2020.○.○. 설계변경하여 도금액 ○○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0.9.1. 준공한 사업이다.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개설사업	○○	도로개설 L=○○m	154	107	47	2020.3.27. ~2020.9.1.	(주)○○○○○○ 대표 ○○○	준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밖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의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에는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같은 법 제28조(재결의 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 시행한 「○○○○○○ 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20.9.8. 준공검사를 완료한 소로2-36호선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서는 주민불편, 통행불편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 ○○ 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면서도 ○○○ ○○○-3(○○○, ○○○)와 ○○○ ○○○-6(○○○, ○○○(亡))의 소유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도로개설 목적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익사업)이 준공(2020.○.○.) 된 이후에 미 개설구간 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추진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수용재결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종류와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토지수용재결 신청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익사업) 공사를 준공하고, 사업인정 고시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 일부 미개설로 주민불편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1] ○○○○○○ 현황

< 평면도 >	< 전경사진 >
---------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 개설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취득 불가로 일부구간 미개설 상태에서 준공검사 하고, 공사준공 이후 공사완료공고를 미이행 하였으며, 공익사업 준공 이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추진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없어 토지수용재결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추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 ○○○○○○ ○○○○○○ ○○○○○○과 ○○○○○○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신청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시정 요구

제 목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은 『○○○○○○○○ 시설 ○○○』를 위해 ○○군 ○○읍 ○○리 2번지 일원(○○○○지구 주거5)에 건축공사는 남해군 소재 ○○○○(주) 대표 ○○○과, 기계공사는 창원시 소재 (주)○○○○○ 대표 ○○○과 계약하고 2019. 4. 8. 착공하여 2020. 7. 2. 준공하였다.

위 치	도급자	사업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군 ○○읍 ○○리 ○번지 일원	○○○○(주) ○○○	○○○○○○○○○○ 시설현대화사업 시 설공사(건축)	2,446	2178	267	2019.04.08.~ 2020.06.26.	준공 20.6.22.
	(주)○○○○○○ ○○○	○○○○○○○○○○ 시설현대화사업 기 계설비 공사	1,264	723	540	2019.10.23.~ 2020.07.18.	준공 20.7.18.

2. 택지개발지구 내 행위허가 없이 건축공사 시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269호(○○○.○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488호(○○○○.○○.○○.)로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받은 면적 000m² 수용인구 000인(000호) 사업시행자 ○○군수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 및 주변 도시의 주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사업 지구이다.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추진 중이며, 『○○○○○○○○ 시설 현대화사업』의 건축공사를 추진한 토지인 ○○읍 ○○리 2번지 일원은 2단계 사업구간(사업기간 2017~2021년) 안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단독주택용지(○○○○○)에 포함된다.

토지이용계획도	항공사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 1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성토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과에서 작성한 『○○○○○○○○○○ ○○ 설치 검토(○○○○과-○○호, 2017. 2.17.)』 업무보고서를 보면 군수 지시사항(2017. 2. 6.)으로 첨단 유리온실 또는 첨단 비닐온실을 설치할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때 문제점으로 ○○군 ○○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 2단계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군 ○○○○과에서 작성한 『○○○○○○○○○○ 시설현대화 추진계획(○○○○과-○○호, 2017. 8. 18.)』 업무보고서에서는 ○○○○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와 협의하는 한편, 문제점으로 ○○군 ○○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2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가설건축물(○○○○)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때 ○○○○○장, ○○○○○장의 협조란에 각각 서명된 사실이 있다.

또한 ○○군 ○○○○과에서 작성한 『○○○○○○○○○○ 시설현대화 추진 검토(○○○○과-○○호, ○○○○. 2. 26.)』 업무보고서에서는 ○○○○○○○○ 건립공사 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개발지역 내 설치 가능한지를 담당부서인 ○○○○○와 ○○○○○와 2017. 8. 18.에 협의하였고, ○○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2단계에 포함되며 가설건축물(유리온실) 범위내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때 ○○○○○장, ○○○○○○, ○○○○○○과장, ○○○○○○의 협조란에 각각 서명된 사실이 있다.

○○군 ○○○○과에서 작성한 3차례의 보고서를 볼 때 ○○○○○○○○ 시설현대화 사업부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보고하였지만, 업무보고에는 조성이 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될 건축물이 향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언제까지 존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군에서 추진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된 사실이 없다.

○○군은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구 택지개발사업』 2 단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 담당부서인 ○○○○○와 공문상으로는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어, 총 사업비 ○○여 억원이 투자된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언제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될지도 모르는 등 장기적으로 불명확 하였음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군에서 사업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도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축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제1항에 따라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지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하여 계약할 수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에서는 『○○○○○○○○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 ○○○○○○ ○○○○○) 건축공사가 각각 단일한 건축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물으로써 효율적인 공사 및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할 수 없으며 향후 하자책임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와 기계 설비공사를 분리한 사실이 있으며,

『○○○○○○○○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준공 기한연기 ○○○○과-4287호, 2020. 5 .27.) 업무보고에 따르면 건축공사기간은 당초 2019. 4. 8.~2020. 6. 1.까지, 기계설비공사는 2019.10.23.~2020. 7. 18.로 공사기간이 서로 다름에 따라 동일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연계가 서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건축공정의 절대공기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4. 건축감리용역 시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그 외의 건설공사로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담당하는 ○○군 ○○○○○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과-3618호, 2019. 4. 18.)하였고, ○○군 ○○○○○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2019-○○○○○-공용건축물-제2호, ○○○○○-○○○○호, 2019. 4. 28.)를 한 사실이 있다.

○○군 ○○과에서는 ○○○○○○○○ 시설현대화 사업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공사 감독관으로 ○○○(○○○○)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군은 당해 사업이 가설건축물로써 건축공사 감리 대상이 아니며, 공종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공사 감독관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시설현대화사업(건축) 감리용역』을 ‘건축사사무소 ○○○○○’과 용역계약(19.6백만원, 2019. 5. 27.~2020. 6. 26.)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약 19.6백만 원의 용역비가 추가 투입되는 등 「건축법」 제25조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건축구조검토확인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의 경우 제48조(구조내력 등)을 적용하지 않으나 단서조항 가.에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및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2항에 따라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과에서는 건축설계용역을 할 때 ○○○ ○○○ 1층 평면도 상의 기둥과 기둥 사이(X2-Y3과 X4-Y3, X2-Y6과 X4-Y6의 간격을 말한다)의 중심선 간격이 18m이며, G.L(지표면)에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14.1m임에도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지 아니하여 해당건축물의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구조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군 ○○○○○는 제출된 가설건축물을 검토하면서 경간이 18m이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14m라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확인대상으로써 신청자에게 적법한 구조안전의 확인서 등의 제출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신고수리 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상실하였다.

○○○ ○○○ 1층 평면도	○○○ ○○○ 주단면도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군 관련자 실무담당자 ○○○○과 ○○○○○○○○ ○○○의 문답결과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지구 2단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군수 지시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위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② 관계기관 의견

○○군의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실무담당자로서 『○○○○○○○○○ 시설 ○○○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한 실무책임자 ○○○○과 ○○○○○○○○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를 위반하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적으로 ○○○○에 활용되어야 할 건축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무리하게 『○○○○○○○○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실무담당자 ○○○○과 ○○○○○○○○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 시설 ○○○○』으로 ○○○○지구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2동에 대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와 협의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와 ○○○○○○에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관광지 통나무집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 ○○○○○)
조 치 기 관 ○○군(○○○○○, ○○○○○)
내 용

1. 업무개요

○○군 ○○○○○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 소재 (주)○○○○○○ 대표 ○○○과 2017. 12. 4. 계약하고 2017. 12. 6. 착공하여 2018. 12. 27. 준공하였다.

위 치	도급자	사업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군 ○○○ ○○○리○○○번지 외 2필지(○○○)	(주)○○○○○○○ 대표 ○○○	○○○○집 4동 건립	1,039	862	177	2017.12.6. ~2018.12.27.	○○.

2. 관급자재 미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군 ○○○ ○○○리 ○○○번지 일원 ○○○관광지 내에 ○○○○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주)○○○○○ 대표 ○○○와 2017. 3. 9.에 ○○백만원에 계약하고, 2017. 8. 9.에 용역을 준공하였다.

○○군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난 후 2018. 3. 16. 계획시설의 기둥높이가 3.5~4m에 달해 시설사용 중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단층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당초 ○○ 집 3동에서 4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변경 계획보고(○○○○○○○○-○○○○호, 2018. 3. 6.)를 하였고,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총 공사비 ○○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약 25%가 증가된 202백만원이 증액되었다.

○○군은 실시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용역자와 추가로 계약을 맺어 설계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용역이 완료된 실시설계용역자로 하여금 과업에서 벗어난 추가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을 납품하게 하였으며, 설계변경과정 중 당초 필로티 하부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을 위해 계획하였던 140mm 비드법 보온재(가등급)는 거실의 바닥이 직접 지상에 닿게 됨으로써 보온재 두께를 95mm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0mm로 그대로 사용하는 등 설계변경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검토가 부족하였다.

【사진1】 설계변경 단면도

또한 보행자보도에 사용되는 흙콘크리트(RS-02-100 t100mm)도 ○○ 1개 동이 늘어남에 따라 물량이 당초 379m²에서 389m²로 10m²가 증가되었고 할증률 3%를 반영한 400m²의 흙콘크리트가 2018.12.19.에 현장에 반입·시공되었으며, 준공 시에도 400m²물량 모두가 시공된 것으로 준공처리 되었다.

하지만 ○○군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흙콘크리트 관급자재 납품업자인 (주)○○○○가(○○ ○○ ○○○ ○○○4, 상대동) 작성한 보관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보관증에는 ○○○관광지 통나무집 조성사업에 납품한 흙콘크리트(RS-02-t100mm 습식, 15MPa, 자전거도로) 계약물량 400m² 중 350m²를 시공하고 미시공분 50m²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흙콘크리트가 당초 반입 물량보다 50m²적게 시공된 사유를 보면 우수관계획평면도에서 우수관(원형수로 NS-02형, 폭 0.46.m×112.5m≒50m²)은 흙콘크리트 포장구간과 중복해서 시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설계내역서 작성 시 중복되는 구간을 감안하여 물량을 조정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고, 준공사진을 볼 때도 흙콘크리트로 시공되어야 하는 구간에 우수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2】 흙콘크리트 포장 구간 및 우수관 중복구간

우수관 계획평면도	우수관 및 흙콘크리트 중복 시공사진

○○군은 흙콘크리트가 400㎡ 중 350㎡만 사용되고 50㎡가 남았다면 관급자재대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실제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처리 하였어야 했는데 공사감독자는 현장 확인 없이 준공처리 하였으며, 준공 이후 흙콘크리트가 50㎡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에도 적법한 회계절차를 통해 정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보관증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흙콘크리트 50㎡에 대한 특별한 사용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집기류 등 시설비사용 불가 품목 구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14-1. 시설비(401-01)는 토지 매입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7-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2018. 7. 11.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축공사의 기타공사 내역에 [표1]과 같은 물품을 시설공사비에 포함시켜 시설비로 숙박시설 집기류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급으로 1동당 〇〇〇〇원, 총4개동에 〇〇〇〇원 상당의 물품

을 시설공사 내역서에 포함시켜 구매하여 시설비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표1】 시설공사 내역에 포함된 물품구입 내역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금액(원)	비 고
	합 계			2,581,579	
1	신발장	1.0m	1	○	1~4동 동일
2	TV받침 장식장	3.3m	1	○	
3	바베큐테이블	-	1	○	
4	TV	43인치	1	○	
5	냉장고	168리터	1	○○○	

6.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건축협의를 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만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는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 조례」 제44조(건설공사 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제1항제2호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인가·허가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에서는 ○○군 ○○ ○○○리 ○○○번지 외 2필지 일원의 ○○ ○관광지 ○○○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19. 4. 8.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실시하였고, 건축허가부서인 ○○○○○에서는 ○○○○. 7.13. 건축협의 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8. 7. 18.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면 ○○군 ○○○○○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와 별표4의2에 따른 지반조사보고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등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포함하여 다시 ○○○○○에 그 적정성을 재차 심사받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누락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군 ○○○○○에서는 사업지로부터 170m에는 경상남도 도지정 문화재 제○○○호(2009.11.19.) ○○ ○○○(○○군 ○○○ ○○○로1길 8-1)가 위치하여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할 때 문화재 관계부서에 협의를 실시하여 『○○○관광지 ○○○○ 조성사업』 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도지정문화재인 ○○○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건축협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정산한 관급자재비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위반하여 포장공사 설계내역 오류로 현장 반입된 관급자재가 남았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물량을 사용한 것

으로 준공처리하였고, 준공 이후 관급자재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보관증을 임의로 보관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설비로 숙박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 ○○○ 조성사업』 실무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현, ○○○)과 실무책임자 ○○○○○ 지방행정주사 ○○○(현,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관급자재 잔여물량을 정산하지 않고 보관증으로 보관 처리 중인 흙콘크리트 50㎡ 약 2,300천원 상당에 대해서는 정산 또는 관급자재 납품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 ○○○○○)

조 치 기 관 ○○군(○○○○○, ○○○○○)

내 용

1. 업무개요

○○군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였다.

【표1】 ○○○○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층수	토지이용계획
2020-○○○○○- 신축허가-13	○○읍 ○○리 1568	○○○	단독주택	186.26	2	단독주택용지
2020-○○○○○- 신축허가-9	○○읍 ○○리 1603	○○○	단독주택	289.56	2	단독주택용지
2020-○○○○○- 신축허가-6	○○읍 ○○리 1675	○○○	단독주택	274.86	2	단독주택용지
2020-○○○○○- 신축허가-4	○○읍 ○○리 1614	○○○	단독주택	174.1	2	단독주택용지
2019-○○○○○- 신축허가-13	○○읍 ○○리 1635	○○○	단독주택	110.23	1	단독주택용지
2019-○○○○○- 신축허가-5	○○읍 ○○리 1659	○○○	단독주택	123.35	2	단독주택용지
2018-○○○○○- 신축허가-28	○○읍 ○○리 1699	○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2,997.352	6	준주거용지
2018-○○○○○- 신축허가-29	○○읍 ○○리 1696	○○	제1종근린생활시설	434.25	1	준주거용지
2018-○○○○○- 신축허가-19	○○읍 ○○리 1563	○○○ 외 1	제1종근린생활시설	391.2	2	단독주택용지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3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며,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제3항에서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용어의 정의)제1항제5호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하며, 다. “1층부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또한 같은 조제1항제7호 가.“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고,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에서 1)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에 대해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고 2)경계부에서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제3조(건축한계선)제1항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편제1장제6조의5. 가항(건축한계선)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고 제9조(전면공지)제1항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 중 전면도로와 면한 공지는 전면공지로 ‘제1형제1장제5조의7.가항(전면공지) 및 나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제4항에서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제사항 준수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군 ○○○○○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협의회신 하였고,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특별한 검토없이 건축허가 하여 ○○○○○지구 지구단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위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지구 내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검토결과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위반사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배치도
2020-○○○○○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조경시설’이 설치됨
2020-○○○○○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조경시설’이 설치됨
2020-○○○○○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됨
2020-○○○○○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부설주차장’과 계단이 설치됨
2019-○○○○○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4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도로 포장되어 있지 않음
2019-○○○○○ -신축허가-○	○○읍 ○○리 ○○○○	○○○	단독주택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5호 가.(건축한계선)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나, 전면 차고가 약 0.5m 건축선을 침범하였음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4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도로 포장되어 있지 않음
2018-○○○○○ -신축허가-○○	○○읍 ○○리 ○○○○	○	제1종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5호 가.(건축한계선) 위반 ▶준주거용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3m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조경시설’이 설치됨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5호 다.(1층부 벽면지정선) 위반 ▶준주거용용지 내 지정된 1층부 벽면 지정선 2m에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나 1층의 벽면은 건축한계선 만큼 3m 후퇴한 부분만큼 이격되어 있음

2018-○○○○○ -신축허가-○○	○○읍 ○○리 ○○○○	○○	제1종근린 생활시설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5호 다.(1층부 벽면지정선) 위반 ▶준주거용용지 내 지정된 1층부 벽면 지정선 2m에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나 1층의 벽면은 건축한계선 만큼 3m 후퇴한 부분만큼 이격되어 있음
2018-○○○○○ -신축허가-○	○○읍 ○○리 ○○○○	○○○ 외 1	제1종근린 생활시설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제1항7호 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위반 ▶단독주택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1m으로 형성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에 장애를 주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됨

3. 복합건축물 건축허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1호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읍 ○○리 ○○○○번지에 ○○○-○○○○○-28호(2018. 7. 25.)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연면적의 6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개별난방방식으로써 구획된 각 실마다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된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용부분인 복도에만 배연창을 설치하여 관련 기준에 맞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등의 조치 없이 부당하게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계단은 계단의 단너비가 계단의 양 끝단에서 서로 다른 돌음계단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나 지상2층 평면도의 X3-Y2열 부위의 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등의 조치 없이 부당하게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 ○○지구 내에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소홀히 검토한 **실무담당자 ○○○○○ 지방행정주사 ○○○(현, ○○○)**, **○○○○○ 지방행정서기 ○○○(현, ○○○)**, **○○○○○ 지방시설서기 ○○○**과 건축법령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피난·방화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을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한 **실무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같은 법 제52조의2(실내건축),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및 제14조(배연설비),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함”으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건
축사사무소 ○○○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행정처
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공 중인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피난계단 및 배연창을 법령에 적합하게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직원에게 대해서는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업무개요

○○군은 『○○○체육관 건립공사』를 위해 ○○군 ○○읍 ○○○ 529번지 일원에 ○○○ 소재 ○○○(주) 대표 ○○○과 2019. 12. 13. 계약하고 2019. 12. 18. 착공하여 감사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위 치	도급자	사업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읍 ○○○ 529번지	○○○ (주)	○○○체육관 (운동시설, 연면적 ○○○○㎡, ○층)	8,517	5,810	2,707	2019.12.18.~ 2021. 9. 2.	

2.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은 발주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는 기초공사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500mm×7m) 총46본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5호에 따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2호에 따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강관 시스템 동바리 10m 초과)가 사용되는 공사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다.

○○군은 2020. 5. 20. 건설사업자인 ○○○(주)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 1. 23.)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등의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하나 의뢰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613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군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 후 명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건설사업자에게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아, 건설사업자가 임의로 선정된 (주)○○○○에서 향타기 및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군은 『○○○체육관 건립공사』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착공계에 품질시험계획이 첨부되어 제출되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2항에 따라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이 적절한지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가설구조물 구조안전검토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에서 시행한 『○○○체육관 건립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항제2호에 따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강관시스템 동바리 10m초과)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제5의2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군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공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확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시켜,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받지 않아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용건축물 착공신고 사항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건축협의를 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7의2에서 운동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제5호에 따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 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군은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에서는 ○○군 ○○읍 ○○○ ○○○번지 외 7필지 일원의 ○○○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19. 7. 25.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실시하였고, 건축협의부서인 ○○○○○에서는 2019. 11. 8. 건축협의 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9. 12. 18.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감사일 현재까지 ○○군 ○○○○○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와 별표4의2에 따른 지반조사보고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등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포함하여 다시 ○○○○○에 그 적정성을 재차 심사받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받을 수 없었던 ○○군 ○○○○○에서는 건축사협회에 『○○○체육관 건립공사』 상주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통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체육관 건립공사』 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

5.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심의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8호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체육관은 건축물 내부공간의 체육활동의 편의와 시선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부에 기둥이 없는 구조로 계획되었고, 기둥과 기둥 사이 최장거리는 ○○○m에 달하여 기둥과 기둥사이가 20m를 초과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물 착공 전 ○○군 건축위원회(구조전문위원회)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주요구조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설계근거기준, 하중조건분석, 구조의

형식선정 및 구조안전 검토 등에 대해 구조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 없이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등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등을 심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사진1】 ○○○체육관 단면도 및 항공사진

설계도서(주단면도)	항공사진(촬영일: 2020.10.19.)

6. 경관심의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며, 「○○군 경관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공공 문화·집회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운영 지침」 4-1-2 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 ○○○○○에서는 ○○군 ○○읍 ○○○ ○○○번지 일원에 운동시설(○○○체육관, 연면적 ○○○○㎡) 용도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경관법」 및 「○○군 경관조례」에 따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경관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소방관진입 표시창 설계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호에 따라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2층 관람석이 설치된 건축물로써 2층 평면도와 창호일람도를 검토한 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건축법」 제 29조에 따라 ○○군 ○○○○○와 건축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검토되지 않는 등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55조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와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를 누락하였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상주감리로 배치된 건축사보의 이중배치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심의 및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진입창을 누락하는 등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시설주사 ○○○(현, ○○)과 실무책임자 ○○○○○ 지방행정주사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특수구조심의와 경관심의 절차를 누락하고, 소방관진입 표시창을 누락하여 설계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공 중인 ○○○체육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맞게 소방관진입표시창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